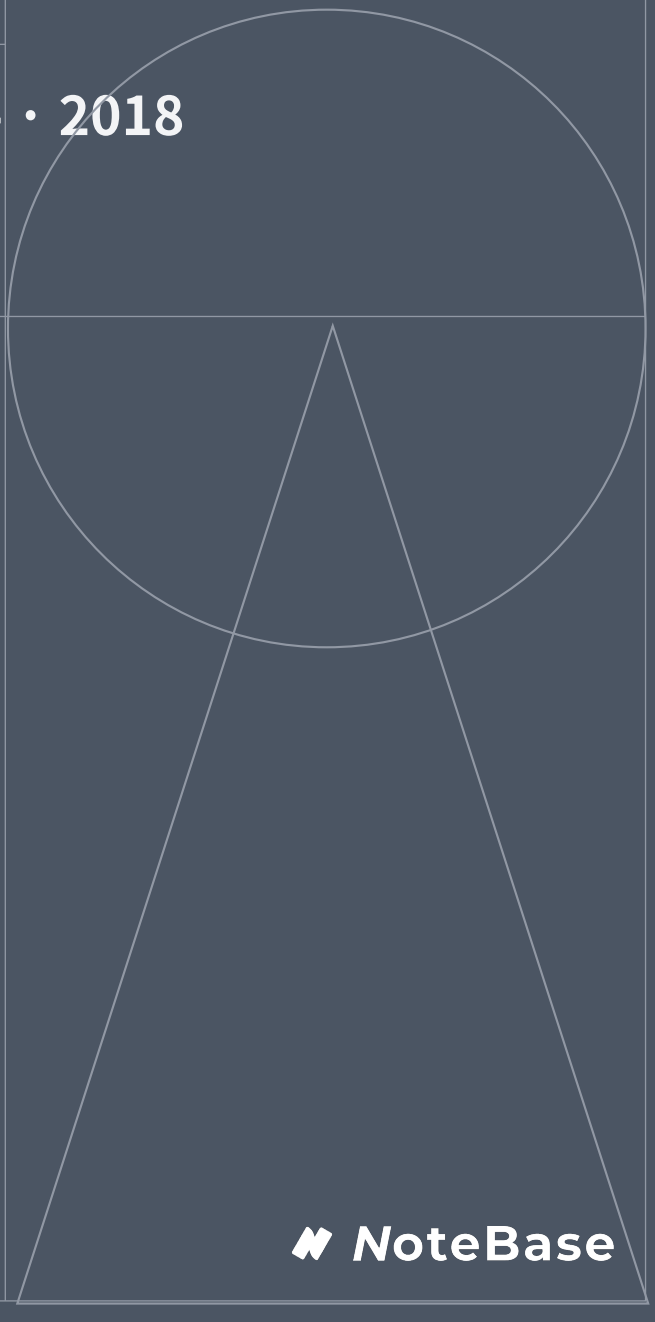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18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18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18**

**문 1. 투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지 않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② 종업원으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③ 장래 자가사용할지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토지는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④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보안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⑤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제거될 때까지 투자부동산으로 계속 분류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을 보유 목적과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다. 자가사용부동산은 재화·용역의 생산이나 공급 또는 관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려고 보유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이다. 미래 사용 목적을 아직 정하지 못한 토지는 장기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이다.

② O.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업원이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급하더라도 자가사용부동산이다. 실제 사용 형태가 종업원 사용이므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③ X. 틀린 표현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이다. 장래 자가사용할지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토지는 장기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④ O.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보안·관리용역은 전체 계약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수용역의 대표적 사례이므로 그 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제공하는 용역이 중요한 경우에는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⑤ O.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은 채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거될 때까지 투자부동산으로 계속 분류하며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은 미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자가사용 예정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자가사용으로 결정된 토지와 사용 목적이 미정인 토지는 다르며, 목적 미정 토지는 투자부동산이다. 또한 ④는 부수용역의 제공 여부가 아니라 그 용역이 전체 계약에서 중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부동산의 보유 목적을 확인한다. 임대수익·장기 시세차익·토지의 미래 용도 미정이면 투자부동산, 직접 사용이나 종업원 사용이면 자가사용부동산,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중요성을 추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장기 시세차익·용도 미정 토지는 투자부동산, 종업원 사용은 자가사용부동산, 개발 없는 처분 결정은 제거 시까지 투자부동산이다.

NoteBase

**문 2.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②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단한다.

③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을 보상금은 취득시점의 추정금액을 취득원가에 조정한다.

④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에 제거한다.

⑤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중단 시점, 제3자 보상금의 인식, 제거 및 회계추정 변경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형자산의 손상·소실·포기와 제3자 보상금은 서로 별개의 경제적 사건이다. 따라서 자산의 손실은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보상금은 받을 금액을 취득원가에서 미리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토지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하지 않지만, 토지 원가에 포함된 해체·제거·복구원가 중 관련 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 부분은 그 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② O — 사용정도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가상각은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단한다. 단순한 운휴만으로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③ X — 틀린 표현은 '취득시점의 추정금액을 취득원가에 조정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손상·소실·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을 보상금은 그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O — 유형자산은 처분할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해 미래경제적효익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을 때 장부에서 제거한다.
⑤ O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는 추정에 기초한 항목이므로 이를 변경하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③은 자산의 손실과 제3자 보상금을 하나의 사건처럼 상계하여 취득원가에 반영하도록 서술한 점이 함정이다. 두 사건은 분리하며, 보상금의 인식 시점도 취득시점이 아니라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시점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관련 보상금 문제에서는 먼저 자산의 손실 처리와 보상금의 인식을 분리한다. 이어서 보상금은 수취권 발생 시 당기손익, 처분 또는 미래경제적효익 소멸 시 자산 제거, 내용연수·잔존가치·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 변경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보상금은 수취권 발생 시 당기손익, 자산 손실과는 분리한다.

NoteBase

**문 3.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종속기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②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④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이다.

⑤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연결재무제표의 기본 작성 원칙과 투자기업에 대한 연결 예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처럼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종속기업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지만, 투자기업이 아닌 그 지배기업은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까지 연결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이다.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이 자신은 투자기업이 아니라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한다.

② O —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O —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O —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한 채 지배기업의 소유지분만 변동하는 거래는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

⑤ O — 피투자자의 연결은 투자자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시작하고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중지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투자기업 자체에 적용되는 공정가치 측정 예외를 투자기업이 아닌 상위 지배기업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 함정이다. 상위 지배기업 자체가 투자기업인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자기업 관련 선지에서는 먼저 회계처리 주체가 투자기업인지 확인한다. 주체가 투자기업이면 종속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측정 원칙을 검토하고, 주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그 지배기업이면 투자기업인 종속기업을 통한 피지배기업까지 연결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투자기업은 공정가치, 투자기업이 아닌 상위 지배기업은 연결이다.

NoteBase

**문 4.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될 수 있는 것은?**

① 최초 인식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②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③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④ 무형자산 재평가잉여금

⑤ 관계기업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지분법기타포괄손익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항목과 재분류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분류조정은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정해진 요건이 충족된 후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처리이다.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험회피 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반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및 자산 재평가잉여금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최초 인식 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처분하더라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될 수 있는' 항목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다.
② X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뒤 후속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이를 재분류 가능 항목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다.
③ O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며, 위험회피 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④ X — 무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자산의 사용이나 제거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는 당기손익 재분류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이를 재분류 가능 항목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다.
⑤ X — 관계기업의 유형자산 재평가에서 발생한 지분법기타포괄손익은 기초가 되는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의 성격을 따르므로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이를 재분류 가능 항목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모든 항목이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④의 이익잉여금 직접 대체를 당기손익 재분류와 혼동하거나, ⑤의 지분법기타포괄손익을 명칭만 보고 재분류 가능 항목으로 판단하는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항목의 기초가 되는 손익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처럼 미래에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재분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분상품의 기타포괄손익 지정, 확정급여 재측정 및 자산 재평가는 비재분류 항목으로 판단한다. 지분법기타포괄손익은 관계기업에서 발생한 기초 항목의 재분류 여부를 그대로 따른다.

**암기 포인트**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효과적 부분은 재분류 가능, 지분상품·확정급여 재측정·재평가잉여금은 재분류 불가이다.

NoteBase

**문 5. 20x1년 12월 31일 (주)세무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의 90%가 소실되었다. (주)세무의 이용가능한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의 추정 손실금액은? (단, (주)세무의 매출은 모두 신용거래이다.)**

| | | | | | |
|---|---|---|---|---|---|
| 기초재고 | | ₩150,000 | 당기매입액 | | ₩12,000,000 |
| 매출채권(기초) | ₩80,000 | | 매출채권(기말) | ₩120,000 | |
| 손실충당금 | (8,000) | 72,000 | 손실충당금 | (10,000) | 110,000 |

○ 당기 매출채권 현금회수액: ₩11,500,000
○ 당기 회수불능으로 인한 매출채권 제거 금액: ₩5,000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총이익률은 40%이며 큰 변동은 없었다.

① ₩4,696,920
② ₩4,700,700
③ ₩4,704,480
④ ₩5,223,000
⑤ ₩5,268,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매출채권의 변동으로 당기 신용매출액을 역산한 뒤, 매출총이익률법으로 화재 직전 재고자산을 추정하고 그중 90%를 손실액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재고는 150,000원, 당기매입액은 12,000,000원이다.
기초 매출채권 총액은 80,000원, 기말 매출채권 총액은 120,000원, 현금회수액은 11,500,000원, 매출채권 제각액은 5,000원이다.
모든 매출은 신용거래이며,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의 40%이므로 매출원가율은 60%이다.
화재로 소실된 비율은 화재 직전 추정 재고자산의 90%이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총액의 회수 흐름을 구하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NoteBase

### 사용할 공식

신용매출액=현금회수액+기말 매출채권+제각액-기초 매출채권
매출원가=매출액×(1-매출총이익률)
기말재고=기초재고+당기매입액-매출원가
추정 손실액=화재 직전 추정 재고×90\%
모든 매출이 신용거래이므로 매출채권 총액의 증감과 회수액·제각액을 이용해 매출액을 구할 수 있다. 이후 매출총이익률법으로 매출원가와 화재 직전 재고를 차례로 추정한다.

### 계산 과정

1. 당기 신용매출액은 11,500,000원 + 120,000원 + 5,000원 - 80,000원 = 11,545,000원이다.
2. 매출원가율은 100% - 40% = 60%이므로 추정 매출원가는 11,545,000원 × 60% = 6,927,000원이다.
3. 화재 직전 추정 재고자산은 150,000원 + 12,000,000원 - 6,927,000원 = 5,223,000원이다.
4. 재고자산의 90%가 소실되었으므로 추정 손실액은 5,223,000원 × 90% = 4,700,700원이다.

### 선지 판단

① X — 4,696,920원은 이를 90%로 나누면 화재 직전 재고가 5,218,800원이라는 뜻이 되어, 올바르게 계산한 5,223,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손실액은 4,700,700원이다.
② O — 화재 직전 추정 재고 5,223,000원의 90%는 4,700,700원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③ X — 4,704,480원은 기초·기말 매출채권을 대손충당금 차감 후 순액인 72,000원과 110,000원으로 놓고 제각액도 빠뜨리면 나오는 값이다. 매출액 역산에는 매출채권 총액 80,000원과 120,000원 및 제각액 5,000원을 사용해야 하며, 올바른 손실액은 4,700,700원이다.
④ X — 5,223,000원은 화재 직전의 추정 재고자산 전액이지 90% 소실에 따른 손실액이 아니다. 여기에 90%를 곱한 4,700,700원이 올바른 손실액이다.
⑤ X — 5,268,000원은 화재 직전 추정 재고 5,223,000원보다도 크므로 재고의 90%인 손실액이 될 수 없다. 매출채권 총액으로 매출액을 역산하고 소실률을 적용한 올바른 손실액은 4,700,700원이다.

###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매출채권을 대손충당금 차감 후 순액으로 사용하거나 제각액을 누락하는 것, 그리고 ④처럼 화재 직전 추정 재고 전액을 손실액으로 고르는 것이다. 매출액은 매출채권 총액의 흐름으로 역산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소실률 90%를 곱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용매출액 역산 → 매출원가율 산정 → 화재 직전 재고 추정 → 소실률 적용의 순서로 판단한다. 매출채권 제각액은 채권 감소 항목이므로 매출액을 역산할 때 회수액과 함께 더해 주며,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매출채권 총액으로 매출을 역산하고, 기초재고 + 매입 - 매출원가로 화재 직전 재고를 구한 뒤 소실률을 곱한다.

NoteBase

**문 6. (주)세무는 20x1년 초 가건물이 있던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기존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건물의 취득원가는?**

| | | | |
|---|---|---|---|
| 토지구입대금 | ₩200,000 | 토지소유권이전비 | ₩3,000 |
| 토지의 정지 및 측량비 | 50,000 | 진입로 공사비 | 30,000 |
| 건물신축 허가비 | 25,000 | 가건물 철거비 | 18,000 |
| 신축건물 공사원가 | 150,000 | 가건물 철거 부산물 매각수입 | 5,000 |
| 건축설계비 | 15,000 | 토지분 재산세 | 4,000 |
| 건물등록비 | 20,000 | 울타리 설치공사 | 13,000 |

① ₩185,000

② ₩210,000

③ ₩223,000

④ ₩228,000

⑤ ₩241,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장부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신축할 때 각 지출을 토지, 토지개량, 건물 또는 기간비용으로 구분하여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건물에 직접 귀속되는 금액은 신축건물 공사원가 150,000원, 건축설계비 15,000원, 건물신축 허가비 25,000원, 건물등록비 20,000원이다.
토지구입대금·토지소유권이전비·토지의 정지 및 측량비는 토지 원가이고, 기존 가건물 철거비에서 철거 부산물 매각수입을 뺀 금액도 신축건물 원가가 아니라 토지를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원가이다. 진입로 공사비와 울타리 설치공사비는 별도의 토지개량물 원가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기간비용이다.

**사용할 공식**

건물 취득원가 = 신축건물 공사원가 + 건축설계비 + 건물신축 허가비 + 건물등록비
건물을 취득하여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직접 필요한 지출만 건물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 구분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건물에 직접 귀속되는 네 항목을 선별한다.
2. 150,000원 + 15,000원 + 25,000원 + 20,000원 = 210,000원이다.
3. 따라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21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85,000원은 신축건물 공사원가·건축설계비·건물등록비만 합산하여 건물신축 허가비 25,0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른 금액은 210,000원이다.
② O — 건물에 직접 귀속되는 150,000원, 15,000원, 25,000원, 20,000원을 합산한 210,000원과 일치한다.
③ X — 223,000원은 건물 원가 210,000원에 가건물 순철거비 13,000원(18,000원 - 5,000원)을 잘못 더한 금액이다. 순철거비는 토지 원가에 포함하므로 올바른 건물 원가는 210,000원이다.
④ X — 228,000원은 건물 원가 210,000원에 가건물 철거비 18,000원을 잘못 더하고 부산물 매각수입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철거 관련 순액은 토지 원가로 처리하므로 올바른 건물 원가는 210,000원이다.
⑤ X — 241,000원은 건물 원가 210,000원에 가건물 철거비 18,000원과 울타리 설치공사비 13,000원을 잘못 더한 금액이다. 철거 관련 금액은 토지 원가, 울타리는 토지개량물 원가이므로 올바른 건물 원가는 21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기존 가건물의 철거가 신축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비를 신축건물 원가에 넣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있던 가건물을 철거한 순지출은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토지 원가이다. 진입로와 울타리도 건물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토지개량물로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지출이 토지 자체, 토지개량물, 건물 자체 중 어디에 직접 귀속되는지 분류한다. 그다음 건물의 설계·허가·공사·등록처럼 건물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직접원가만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기존 건물 순철거비는 토지, 진입로·울타리는 토지개량물, 설계·허가·공사·등록은 건물 원가이다.

NoteBase

**문 7.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주식 7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다음 자료에 근거할 때, 20x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지배기업 소유주 당기순이익은?**

○ 20×1년 1월 1일 연결분개

| | | | | | |
|---|---|---|---|---|---|
| (차) | 자본금 | 200,000 | (대) | 투자주식 | 240,000 |
| | 이익잉여금 | 30,000 | | 비지배지분 | 90,000 |
| | 재고자산 | 10,000 | | | |
| | 유형자산 | 60,000 | | | |
| | 영업권 | 30,000 | | | |

○ 위 분개에서 재고자산은 당기에 모두 처분되었으며, 유형자산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1년도 (주)세무와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과 ₩30,000이다.

○ 20×1년도 중 (주)세무와 (주)한국 간의 내부거래는 없다.

① ₩49,000

② ₩55,600

③ ₩62,600

④ ₩64,000

⑤ ₩71,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취득일 공정가치 조정이 종속기업의 취득 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뒤, 그 조정 후 이익 중 지배기업 지분을 지배기업의 별도 당기순이익에 더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지배기업 당기순이익 50,000원,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30,000원, 지배기업 지분율 70%이다.
공정가치 조정: 재고자산 공정가치 증가액 10,000원은 당기에 전부 처분되어 매출원가를 10,000원 증가시킨다. 유형자산 공정가치 증가액 60,000원은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므로 당기 감가상각비를 12,000원 증가시킨다. 내부거래가 없으므로 별도의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조정은 없다. 취득일이 1월 1일이므로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전액이 취득 후 이익이다.

NoteBase

### 사용할 공식

종속기업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30{,}000 - 10{,}000 - \frac{60{,}000}{5} = 8{,}000$
지배기업 소유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지배기업 별도 당기순이익+종속기업 조정 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율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취득일 공정가치 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종속기업 이익에서 차감한 뒤 그 이익을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 계산 과정

1. 재고자산 공정가치 증가액 10,000원은 전량 처분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반영한다.
2. 유형자산 공정가치 증가액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비는 $60{,}000 \div 5 = 12{,}000$원이다.
3. 종속기업의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30{,}000 - 10{,}000 - 12{,}000 = 8{,}000$원이다.
4. 지배기업 귀속분은 $8{,}000 \times 70\% = 5{,}600$원이다.
5. 지배기업 소유주 당기순이익은 $50{,}000 + 5{,}600 = 55{,}600$원이다.

### 선지 판단

① X. 49,000원은 연결 당기순이익 58,000원에서 비지배지분을 조정 전 종속기업 이익의 30%인 9,000원으로 잘못 차감한 값이다. 비지배지분은 조정 후 이익 8,000원의 30%인 2,400원이므로, 올바른 지배기업 소유주 당기순이익은 55,600원이다.
② O. $50{,}000 + (30{,}000 - 10{,}000 - 12{,}000) \times 70\% = 55{,}600$원이므로 옳다.
③ X. 62,600원은 재고자산 공정가치 증가액 10,000원의 비용화를 누락하고 추가 감가상각비만 반영한 값이다. 재고자산 조정도 차감하면 올바른 금액은 55,600원이다.
④ X. 64,000원은 재고자산 조정만 반영하고 유형자산의 추가 감가상각비 12,000원을 누락한 값이다. 추가 감가상각비도 차감하면 올바른 금액은 55,600원이다.
⑤ X. 71,000원은 종속기업의 장부상 당기순이익 30,000원에 지분율 70%를 바로 곱하여 두 공정가치 조정을 모두 누락한 값이다. 조정 후 이익 8,000원에 70%를 곱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55,600원이다.

###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종속기업의 장부상 당기순이익 30,000원을 그대로 지분 배분하는 것이다. 취득일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큰 재고자산이 당기에 판매되면 그 차액은 매출원가에, 유형자산 차액은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추가 감가상각비에 반영한 후 지분을 배분한다. 영업권 30,000원은 손상 정보가 없으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상각하거나 차감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종속기업의 취득 후 이익을 확정하고, 재고 판매·유형자산 감가상각 등 공정가치 조정의 당기 손익 효과를 반영한다. 그 조정 후 이익에 지배기업 지분율을 곱하여 지배기업의 별도 당기순이익에 더한다.

**암기 포인트**

종속기업 이익은 '취득 후 이익 → 공정가치 차이의 당기 비용 반영 → 지분율 배분' 순서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8. 20x1년 초 설립된 (주)세무의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
◯ 세무조정사항:
- 정기예금 미수이자 ₩20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0
- 벌금과 과태료 70,000
- 감가상각한도초과액 50,000
◯ 법인세율은 20%로 유지된다.
◯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① ₩214,000
② ₩244,000
③ ₩258,000
④ ₩288,000
⑤ ₩298,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구분하여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원이고 세율은 20%이다.
정기예금 미수이자 200,000원과 감가상각한도초과액 50,000원은 일시적 차이이다.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0원과 벌금·과태료 70,000원은 미래에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영구적 차이이다.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가상각한도초과액에서 생기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사용할 공식**

법인세비용=당기법인세+이연법인세부채 증가-이연법인세자산 증가
당기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 중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로 반영한다. 영구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으며, 이 문항의 접대비한도초과액과 벌금·과태료는 손금불산입 영구적 차이이므로 법인세비용을 증가시킨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과세소득은 1,000,000원-200,000원+150,000원+70,000원+50,000원=1,070,000원이다.
2. 당기법인세는 1,070,000원×20%=214,000원이다.
3. 정기예금 미수이자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200,000원×20%=40,000원이다.
4. 감가상각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50,000원×20%=10,000원이다.
5. 법인세비용은 214,000원+40,000원-10,000원=244,000원이다.

검산하면 영구적 차이만 반영하여 (1,000,000원+150,000원+70,000원)×20%=244,000원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선지 판단**

① X — 214,000원은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한 당기법인세일 뿐이다. 이연법인세 순증가액 30,000원을 반영한 법인세비용은 244,000원이다.
② O — 당기법인세 214,000원에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40,000원을 더하고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10,000원을 빼면 244,000원이다.
③ X — 258,000원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위 계산에 따라 반영한 금액이 아니다. 올바른 법인세비용은 244,000원이다.
④ X — 288,000원은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를 구분하여 계산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법인세비용은 244,000원이다.
⑤ X — 298,000원은 제시된 세무조정과 20% 세율로 산출되지 않는다. 올바른 법인세비용은 244,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214,000원은 당기법인세와 법인세비용을 같은 금액으로 보는 함정이다. 미수이자와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은 일시적 차이이므로 각각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키지만, 접대비한도초과액과 벌금·과태료는 영구적 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무조정 항목을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나눈다. 그다음 과세소득으로 당기법인세를 계산하고, 일시적 차이에서 생기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을 반영하여 법인세비용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회계이익에 영구적 차이만 반영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당기법인세는 과세소득 기준,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에 이연법인세 변동까지 반영한다. 영구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NoteBase

**문 9.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복구조건이 있는 연구용 설비(취득원가 ₩440,000, 잔존가치 ₩5,130, 내용연수 3년, 복구비용 추정금액 ₩100,000)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실제 복구비용은 ₩120,000이 지출되었으며, 잔존 설비는 ₩3,830에 처분하였다. 20x3년도에 이 설비와 관련하여 인식할 총비용은? (단,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10%이며, 기간 3년(10%)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7513으로 계산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180,391

② ₩191,300

③ ₩199,091

④ ₩200,391

⑤ ₩202,466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복구의무가 있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복구비용의 현재가치를 포함하고,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실제 복구비용과 충당부채의 차이·처분손실을 합산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복구비용 추정액의 현재가치는 75,130원이고 이를 설비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내용연수 종료 시 복구충당부채는 100,000원이 되며, 실제 복구비용 120,000원과의 차이는 당기비용이다.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인 잔존가치 5,130원과 처분가액 3,830원의 차이도 처분손실이다.

### 사용할 공식

복구비용 현재가치: $100{,}000 \times 0.7513 = 75{,}130$

연간 감가상각비: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기초 복구충당부채×10\%

이 공식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최초 복구의무의 현재가치를 자산 원가와 충당부채에 함께 반영하고, 이후 할인액의 상각을 기간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최초 복구충당부채와 자산 원가
100,000×0.7513=75,130원
440,000+75,130=515,130원
2. 20x3년 감가상각비
(515,130-5,130)÷3=170,000원
3. 20x3년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20x3년 초 충당부채는 $75{,}130 \times 1.1^2 = 90{,}907.3$원이므로, 이자비용은 $90{,}907.3 \times 10\% \approx 9{,}091$원이다.
4. 실제 복구비용과 충당부채의 차이
120,000-100,000=20,000원
5. 설비 처분손실
5,130-3,830=1,300원
6. 20x3년도 총비용
170,000+9,091+20,000+1,300=200,391원

**선지 판단**

① X — 180,391원은 실제 복구비용이 충당부채보다 큰 데서 생기는 20,000원의 비용을 누락한 금액이다. '180,391원'은 '200,391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191,300원은 20x3년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9,091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191,300원'은 '200,391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199,091원은 잔존 설비의 장부금액 5,130원과 처분가액 3,830원의 차이인 처분손실 1,3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199,091원'은 '200,391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감가상각비 170,000원,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9,091원, 복구비용 차이 20,000원, 처분손실 1,300원을 모두 더하면 200,391원이다.
⑤ X — 202,466원은 위 네 비용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금액은 나머지 세 비용이 맞다고 보면 20x3년 이자비용을 11,166원으로 과대계상한 셈이며, 올바른 이자비용은 약 9,091원이다. '202,466원'은 '200,391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75,130원을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데서 끝내면 안 된다. 마지막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뿐 아니라 충당부채의 할인액 상각, 실제 복구비용과 충당부채의 차이, 잔존 설비의 처분손실까지 모두 당기비용에 포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구의무가 있는 유형자산 문제는 '최초 현재가치 계산 → 자산 원가와 감가상각비 계산 → 충당부채 이자비용 계산 → 실제 지출 차이 계산 → 처분손익 계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복구의무 현재가치는 자산 원가에 더하고, 할인액 상각은 이자비용으로, 실제 지출과 충당부채의 차이는 결제 시점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NoteBase

**문 10.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20x1년 12월 20일 외상으로 구입한 재고자산이 선적지인도조건으로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고, 동 재고자산은 기말재고 실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오류 수정 전 재무비율 산정 시 분모·분자 값은 모두 양(+)의 값을 갖는다.)**

① 20x1년도 매출원가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높다.

② 20x1년도 총자산회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③ 20x1년도 말 현재 당좌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④ 20x1년도 말 현재 부채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⑤ 20x1년도 총자산이익률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운송 중 상품의 누락이 재고자산·매입채무·매출원가·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구한 뒤, 각 재무비율의 분자와 분모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선적지인도조건에서는 상품을 선적한 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기말 운송 중인 상품도 (주)세무의 재고자산이다. 누락액을 $x$라 하면 오류를 수정할 때 재고자산과 매입채무가 각각 $x$만큼 증가한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누락된 매입액과 기말재고액이 같은 금액만큼 함께 증가하므로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은 변하지 않고, 자기자본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정하지 않은 장부는 올바른 금액보다 총자산과 부채가 각각 $x$만큼 작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은 같다.

###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기초재고+당기매입-기말재고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
총자산회전율=매출액/평균총자산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평균총자산
매입 누락과 기말재고 누락이 매출원가에서 서로 상쇄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각 비율의 분자와 분모에 대입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수정하면 당기매입은 $+x$, 기말재고는 $+x$가 되므로 매출원가의 순변화는 $+x - x = 0$이다.
2.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다.
3. 수정하지 않으면 기말 총자산과 부채가 각각 과소계상된다. 이에 따라 평균총자산도 과소계상되지만, 매출액·당기순이익·당좌자산·자기자본은 변하지 않는다.

**선지 판단**

① X. 매입 누락은 매출원가를 낮추지만 같은 금액의 기말재고 누락은 매출원가를 높여 두 효과가 상쇄된다. 따라서 '매출원가율은 높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매출원가율이 변하지 않는다.
② X. 매출액은 변하지 않고 평균총자산이 과소계상되므로 총자산회전율은 높아진다. 따라서 '총자산회전율은 낮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총자산회전율이 높다.
③ X. 재고자산은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좌자산은 변하지 않지만, 매입채무 누락으로 유동부채가 과소계상된다. 따라서 '당좌비율은 낮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당좌비율이 높다.
④ O. 부채는 매입채무 누락액만큼 과소계상되고 자기자본은 변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은 올바른 경우보다 낮다.
⑤ X. 당기순이익은 변하지 않고 평균총자산이 과소계상되므로 총자산이익률은 높아진다. 따라서 '총자산이익률은 낮다'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총자산이익률이 높다.

**오답 포인트**

운송 중 상품을 재고에만 더하고 매입채무를 빠뜨리거나, 매입 누락만 보아 매출원가가 감소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매입과 기말재고가 같은 금액만큼 함께 누락되어 매출원가 효과가 상쇄된다. 또한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지만 당좌자산은 아니라는 점 때문에 ③의 방향이 반대로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인도조건으로 기말 재고의 소유권을 판정하고, 누락된 거래의 자산·부채·손익 영향을 정리한다. 그다음 각 비율에서 변하는 항목이 분자인지 분모인지 확인하면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선적지인도조건의 운송 중 상품은 매수인의 재고이다. 매입과 기말재고가 같은 금액만큼 함께 누락되면 매출원가와 순이익은 그대로이고, 재고자산과 매입채무만 과소계상된다.

NoteBase

**문 11. (주)세무의 20x1년 말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 | | | |
|---|---|---|---|
| 당좌개설보증금 | ₩10,000 | 당좌차월 | ₩1,200 |
| 당좌예금 | ( ) | 우편환증서 | 4,000 |
| 차용증서 | 1,000 | 수입인지 | 500 |
| 소액현금 | 300 | 배당금지급통지서 | 1,500 |
| 종업원 가불증서 | 2,500 | 환매채 | 1,500 |
| 타인발행약속어음 | 10,000 | 정기예금 | 2,000 |

<추가자료>

○ 아래 사항을 조정하기 이전 은행측 당좌예금 잔액은 ₩12,800이다.

- 거래처에 상품 매입 대금 결제로 발행한 수표 ₩7,500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에서 판매 대금으로 입금 통보한 ₩2,800을 (주)세무는 회계처리하였으나, 은행은 전산장애로 인해 입금처리하지 못했다.

○ 환매채의 취득일은 20×1년 12월 1일이며, 4개월 후 환매조건이다.

○ 정기예금은 1년 만기이며, 만기일은 20×2년 1월 31일이다.

① ₩12,100

② ₩13,900

③ ₩15,400

④ ₩15,900

⑤ ₩25,1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은행계정조정으로 당좌예금의 장부상 잔액을 구한 뒤, 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 항목만 합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 조건 정리

은행측 당좌예금 잔액은 12,800원이다. 미인출수표 7,500원은 회사가 이미 장부에서 차감했지만 은행은 아직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고, 거래처 입금액 2,800원은 회사가 이미 장부에 반영했지만 은행의 전산장애로 은행잔액에는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현금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조정된 당좌예금, 소액현금 300원, 우편환증서 4,000원, 배당금지급통지서 1,500원이다.
당좌개설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고, 차용증서·종업원가불증서·타인발행약속어음은 채권이며, 수입인지는 소모품 성격이므로 제외한다. 당좌차월은 부채로 별도 표시한다. 환매채는 취득일부터 환매일까지 4개월이므로 통상 3개월 이내라는 현금성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기예금도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이므로 결산일 현재 잔여 만기가 1개월이어도 현금성자산이 아니다.

### 사용할 공식

조정 당좌예금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은행측 잔액-미인출수표+은행 미반영 입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조정 당좌예금에 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만 더하여 구한다. 은행측 잔액을 출발점으로 삼으므로, 은행에는 반영되었지만 장부에는 이미 반영된 미인출수표를 차감하고 은행만 반영하지 못한 입금액을 가산한다.

### 계산 과정

1. 조정 당좌예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12,800-7,500+2,800=8,100원
2. 현금으로 인정되는 나머지 항목을 더한다.
8,100+300+4,000+1,500=13,900원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3,900원이다.

### 선지 판단

① X — 12,100원은 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빠뜨린 금액으로, 올바른 금액은 13,900원이다.
② O — 조정 당좌예금 8,100원, 소액현금 300원, 우편환증서 4,000원, 배당금지급통지서 1,500원의 합계가 13,900원이다.
③ X — 15,400원은 정답 금액에 환매채 1,500원을 잘못 포함한 금액이다. 환매기간이 취득일부터 4개월인 환매채는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13,900원이다.
④ X — 15,900원은 정답 금액에 정기예금 2,000원을 잘못 포함한 금액이다.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인 정기예금은 결산일 현재 만기가 한 달 남았더라도 현금성자산이 아니므로 올바른 금액은 13,900원이다.
⑤ X — 25,100원은 현금이 아닌 제한성 예금이나 채권성 항목 등을 포함한 과대 금액이다. 각 항목의 성격과 현금성자산의 취득 당시 만기를 기준으로 제외하면 올바른 금액은 13,900원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미인출수표는 은행측 잔액에는 남아 있지만 회사 장부에서는 이미 차감되었으므로 은행측 잔액에서 빼야 한다. 또한 현금성자산의 단기성은 결산일의 잔여 만기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4개월 환매채와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포함하면 안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은행계정조정으로 당좌예금의 장부상 잔액을 확정한다. 그다음 각 항목을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 현금대용증권,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의 현금성자산인지 차례로 판정하고, 제한성 예금·채권·선급성 항목·부채는 제외한다.

### 암기 포인트

현금성자산의 3개월 기준은 결산일의 잔여 만기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만기일까지이다.

NoteBase

**문 12. (주)세무의 20x2년도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현금흐름에 표시된 항목과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 당기순이익 | ₩200,000 | 매출채권 감소 | ₩15,000 |
| 이자수익 | 20,000 | 매입채무 감소 | 12,000 |
| 이자비용 | 35,000 | 미지급급여 증가 | 6,000 |
| 법인세비용 | 40,000 | 이자지급 | 26,000 |
| 감가상각비 | 50,000 | 이자수취 | 18,000 |
| 기계장치처분이익 | 8,000 | 법인세납부 | 42,000 |
| 재고자산 증가 | 25,000 | | |

① ₩223,000

② ₩231,000

③ ₩239,000

④ ₩281,000

⑤ ₩311,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간접법에서는 당기순이익에 비현금·비영업 손익과 영업자산·영업부채의 변동을 조정한 뒤, 별도로 제시된 이자수취·이자지급·법인세납부를 반영하여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을 구한다.

**조건 정리**

당기순이익: 200,000원
손익 조정: 이자수익 20,000원 차감, 이자비용 35,000원 가산, 법인세비용 40,000원 가산, 감가상각비 50,000원 가산, 기계장치처분이익 8,000원 차감
영업자산·부채 조정: 재고자산 증가 25,000원 차감, 매출채권 감소 15,000원 가산, 매입채무 감소 12,000원 차감, 미지급급여 증가 6,000원 가산
실제 현금흐름: 이자지급 26,000원 차감, 이자수취 18,000원 가산, 법인세납부 42,000원 차감

NoteBase

### 사용할 공식

영업활동순현금흐름=당기순이익+손익 조정+영업자산·부채 변동+별도 영업현금흐름
당기순이익에는 이자수익·이자비용·법인세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제거하고, 표에 제시된 실제 이자수취·이자지급·법인세납부액을 다시 반영한다.

### 계산 과정

1. 손익 및 영업자산·부채를 조정한다.
200,000 − 20,000 + 35,000 + 40,000 + 50,000 − 8,000 − 25,000 + 15,000 − 12,000 + 6,000 = 281,000
2. 실제 이자 및 법인세 현금흐름을 반영한다.
281,000 − 26,000 + 18,000 − 42,000 = 231,000
따라서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231,000원이다.

### 선지 판단

① X — 223,000원은 정답 금액이 아니다. 기계장치처분이익 8,000원은 당기순이익에서 한 번만 차감해야 하며, 이를 두 번 차감하면 발생하는 오답이다. 올바른 금액은 231,000원이다.
② O — 모든 손익 조정, 영업자산·부채 변동 및 실제 이자·법인세 현금흐름을 반영하면 231,000원이다.
③ X — 239,000원은 기계장치처분이익 8,000원의 차감을 누락하면 발생하는 오답이다. 처분이익은 현금유입액 자체가 아니므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며, 올바른 금액은 231,000원이다.
④ X — 281,000원은 이자지급 26,000원, 이자수취 18,000원, 법인세납부 42,000원을 반영하기 전의 중간값이다. 이 세 현금흐름을 반영한 올바른 금액은 231,000원이다.
⑤ X — 311,000원은 표의 증감 항목과 실제 현금지급·수취를 모두 올바른 부호로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재고자산 증가와 매입채무 감소는 차감하고, 이자지급과 법인세납부도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231,000원이다.

### 오답 포인트

이익과 현금흐름을 혼동하기 쉽다. 감가상각비는 가산하고 처분이익은 차감하며, 영업자산 증가는 차감하고 영업부채 증가는 가산한다. 또한 이자수익·이자비용·법인세비용의 손익 조정과 실제 이자수취·이자지급·법인세납부의 현금 반영을 한 단계로 섞지 않는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비현금·비영업 손익 조정, 영업자산·부채 변동, 실제 이자·법인세 현금흐름의 순서로 계산한다. 자산 증가는 현금 감소, 부채 증가는 현금 증가라는 부호 원칙으로 검산한다.

### 암기 포인트

간접법의 기본 부호는 비용 가산·이익 차감, 자산 증가 차감·부채 증가 가산이다. 손익에 잡힌 이자·법인세는 제거한 뒤 실제 현금액을 다시 반영한다.

NoteBase

**문 13. 금융자산의 재분류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한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금융자산의 측정범주가 바뀔 때 재분류일의 측정기준과 기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처리 방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법과 손상규정을 적용하는 측정범주이고, 당기손익-공정가치는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측정범주이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는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는 측정범주이다.
재분류에서는 새 측정범주에 맞추어 측정하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옮길 때 기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면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종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O.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면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분류만을 이유로 유효이자율이나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를 조정하지 않는다.
③ X. 틀린 부분은 기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는 표현이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면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기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④ O.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면 기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제거하여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조정한다. 그 결과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해 온 것과 같은 금액이 되며,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재분류 때문에 조정하지 않는다.
⑤ O.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면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유효이자율을 새로 산정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이동 대상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꾼 데 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재분류할 때는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쌓인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재분류 후의 측정범주가 당기손익-공정가치인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인지, 상각후원가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기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지, 자산 장부금액에 조정되는지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이동하면 누적 기타포괄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이동한다.

NoteBase

**문 14. (주)세무의 20x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주이다. (주)세무는 20x1년 4월 1일 처음 전환사채(액면금액 ₩50,000, 전환가격 ₩100)를 발행하였고, 동 전환사채는 당기 중 전환되지 않았다. 20x1년 당기순이익이 ₩1,500,000, 전환사채 이자비용은 ₩120,000, 법인세율이 20%일 때, 희석주당이익은? (단, 계산에 필요한 기간은 월 단위로 한다.)**

① ₩632

② ₩638

③ ₩672

④ ₩750

⑤ ₩798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전환사채의 희석효과를 반영할 때 분자에는 세후 이자비용을 더하고, 분모에는 전환으로 늘어날 보통주식수를 발행일부터 기말까지 가중하여 더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본 유통보통주식수: 2,000주
전환사채 발행일: 20x1년 4월 1일
전환가능주식수: 50,000원 ÷ 100원 = 500주
기간가중치: 9개월 ÷ 12개월
당기순이익: 1,500,000원
이자비용: 120,000원
법인세율: 20%

**사용할 공식**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가 발행일부터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는 전환가정법으로 계산한다.

희석주당이익=당기순이익+이자비용×(1-법인세율)기본 유통보통주식수+전환가능주식수×기간가중치

전환을 가정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분자에 세후 이자비용을 가산하고, 전환사채가 연중 발행되었으므로 추가 주식수에는 9개월의 기간가중치를 적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세후 이자비용은 $120{,}000 \times (1 - 0.20) = 96{,}000$원이다.
2. 조정된 분자는 $1{,}500{,}000 + 96{,}000 = 1{,}596{,}000$원이다.
3. 전환가능주식수는 $50{,}000 \div 100 = 500$주이고, 가중주식수는 $500 \times \frac{9}{12} = 375$주이다.
4. 조정된 분모는 $2{,}000 + 375 = 2{,}375$주이다.
5. 희석주당이익은 $1{,}596{,}000 \div 2{,}375 = 672$원이다. 기본주당이익 750원보다 작으므로 실제로 희석효과가 있다.

**선지 판단**

① X — 632원은 가중된 전환가능주식수 375주를 분모에 더하면서 분자에 세후 이자비용 96,000원을 가산하지 않은 값이다. 틀린 값 632원 → 올바르게는 분자와 분모를 모두 조정한 672원이다.
② X — 638원은 세후 이자비용은 반영했지만 4월 1일 발행한 전환사채의 500주를 1년 전체분으로 분모에 넣어 $1{,}596{,}000 \div 2{,}500 = 638.4$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틀린 값 638원 → 올바르게는 500주에 9/12를 곱하여 672원이다.
③ O — 세후 이자비용을 가산한 1,596,000원을 기간가중한 2,375주로 나누면 672원이다.
④ X — 750원은 전환사채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주당이익 $1{,}500{,}000 \div 2{,}000$이다. 틀린 값 750원 → 올바르게는 전환가정법을 적용한 672원이다.
⑤ X — 798원은 분자에 세후 이자비용 96,000원만 가산하고 분모에 전환가능주식수를 더하지 않은 값이다. 틀린 값 798원 → 올바르게는 분모에도 기간가중한 375주를 더하여 672원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분자와 분모를 한쪽만 조정하거나, 4월 1일 발행을 무시하고 전환가능주식수 500주를 1년 전체에 반영하는 것이다. 전환사채는 분자에 세후 이자비용, 분모에 기간가중 전환가능주식수를 함께 반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사채의 희석주당이익은 '분자: 세후 이자비용 가산 → 분모: 전환주식수의 기간가중 가산 → 기본주당이익보다 작은지 확인'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환사채의 전환가정법은 분자에 세후 이자, 분모에 기간가중 전환주식수를 더한다.

NoteBase

**문 15.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6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6년,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동 차량운반구는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하여 조정하고 있다.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x2년 인식해야 할 당기비용은? (단,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 20×1년 말 | 20×2년 말 |
|---|---|
| ₩550,000 | ₩374,000 |

① ₩16,000

② ₩66,000

③ ₩110,000

④ ₩126,000

⑤ ₩176,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에서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할 때 기존 재평가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당기비용으로 더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600,000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6년
상각방법: 정액법
20×1년 말 공정가치: 550,000원
20×2년 말 공정가치: 374,000원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20×1년에 생긴 재평가잉여금 50,000원은 20×2년 말 재평가 감소액과 우선 상계할 수 있다.

**사용할 공식**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평가 감소액은 동일 자산에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의 범위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당기손익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감가상각비는 600,000원 ÷ 6년 = 100,000원이다. 따라서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500,000원이다.
2. 20×1년 말 공정가치가 550,000원이므로 재평가잉여금은 550,000원 - 500,000원 = 50,000원이다.
3. 20×2년 감가상각비는 재평가된 장부금액 550,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눈 110,000원이다. 따라서 20×2년 말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440,000원이다.
4. 20×2년 말 공정가치가 374,000원이므로 재평가 감소액은 440,000원 - 374,000원 = 66,000원이다. 이 중 50,000원은 기존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초과액 16,000원만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5. 20×2년 당기비용은 감가상각비 110,000원 + 당기손익 재평가손실 16,000원 = 126,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6,000원은 재평가 감소액 중 기존 재평가잉여금을 초과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만 계산한 것이다. 20×2년 감가상각비 110,000원도 당기비용이므로 올바른 금액은 126,000원이다.
② X — 66,000원은 20×2년 말 재평가 감소액 전체이다. 이 중 50,000원은 기존 재평가잉여금과 상계되므로 전액이 당기비용이 아니며, 감가상각비까지 합한 올바른 금액은 126,000원이다.
③ X — 110,000원은 20×2년 감가상각비만 반영한 금액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초과한 재평가손실 16,000원도 당기비용에 포함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126,000원이다.
④ O — 감가상각비 110,000원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재평가손실 16,000원을 합하면 126,000원이다.
⑤ X — 176,000원은 감가상각비 110,000원에 재평가 감소액 66,000원 전부를 더한 금액이다. 기존 재평가잉여금 50,000원을 먼저 상계해야 하므로 올바른 금액은 126,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당기비용'을 감가상각비만으로 보거나, 반대로 재평가 감소액 66,000원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동일 자산의 기존 재평가잉여금 50,000원을 먼저 소진하므로 당기손익에 추가되는 재평가손실은 16,000원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평가모형의 당기비용은 '재평가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한 당기 감가상각비'를 먼저 구한 뒤, 기말 재평가 감소액 중 기존 재평가잉여금을 초과하는 당기손익 인식액을 더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평가 감소는 기존 잉여금부터 차감하고 초과액만 비용으로 처리하며, 당기비용에는 감가상각비도 함께 포함된다.

NoteBase

**문 16. (주)세무는 (주)한국에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이자부약속어음(액면가액 ₩160,000, 5개월 만기, 표시이자 연 9%)을 받고, 이 어음을 2개월간 보유한 후 은행에서 할인하여 ₩161,518을 수령하였다. 동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한다. 이 어음 거래에 적용된 연간 할인율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① 10.2%

② 10.4%

③ 10.5%

④ 10.6%

⑤ 10.8%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자부약속어음의 만기금액을 먼저 구한 뒤, 은행할인액과 남은 만기기간을 이용하여 연간 할인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가액: 160,000원
표시이자율: 연 9%
어음의 전체 만기: 5개월
할인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2개월
할인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3개월
은행 수령액: 161,518원
구해야 할 값: 만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할인율

**사용할 공식**

만기금액=액면가액+액면가액×표시이자율×(5)/(12)
은행할인액=만기금액-수령액
은행할인액=만기금액×연간 할인율×(3)/(12)
은행은 어음의 만기금액에서 남은 3개월분의 할인을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어음의 5개월분 표시이자는 160,000원 × 9\% × (5)/(12)=6,000원이다.
2. 만기금액은 160,000원 + 6,000원 = 166,000원이다.
3. 은행할인액은 166,000원 - 161,518원 = 4,482원이다.
4. 연간 할인율을 $d$라고 하면 $4,482 = 166,000 \times d \times \frac{3}{12}$이다.
5. 따라서 $d = \frac{4,482}{166,000 \times (3/12)} = 0.108 = 10.8\%$이다.

**선지 판단**

① X - 10.2%가 아니라 계산 결과인 10.8%가 적용된다.
② X - 10.4%가 아니라 계산 결과인 10.8%가 적용된다.
③ X - 10.5%가 아니라 계산 결과인 10.8%가 적용된다.
④ X - 10.6%가 아니라 계산 결과인 10.8%가 적용된다.
⑤ O - 만기금액 166,000원에 남은 3개월 동안 연 10.8%를 적용하면 할인액이 4,482원이 되어 수령액 161,518원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할인기간을 어음의 전체 만기인 5개월로 잡거나, 할인율의 기준금액을 액면가액 160,000원으로 잡으면 안 된다. 발행 후 2개월에 할인했으므로 남은 기간은 3개월이며, 이자부어음의 은행할인은 만기금액 16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자부어음 할인 문제는 표시이자를 더해 만기금액을 구하고, 전체 만기에서 보유기간을 빼 할인기간을 구한 다음, 만기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로 할인율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이자부어음의 은행할인액은 '만기금액 × 연간 할인율 × 남은 기간'이다.

NoteBase

**문 17. (주)세무는 재고자산을 소매재고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으로 가정하며 원가율은 저가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매출원가는?**

| | 원가 | 판매가 |
|---|---|---|
| 기초재고 | ₩9,000 | ₩8,950 |
| 당기매입 | 64,410 | 94,100 |
| 매입운임 | 420 | - |
| 매입환출 | 230 | - |
| 매출액 | - | 98,000 |
| 종업원할인 | - | 2,000 |
| 순인상액 | - | 900 |
| 순인하액 | - | 700 |

① ₩61,200

② ₩66,640

③ ₩71,300

④ ₩71,374

⑤ ₩71,39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에서 당기 원가율을 저가기준으로 계산하고, 기말재고의 원가를 구한 뒤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원가 기준 기초재고는 ₩9,000이다. 당기 매입 관련 순원가는 ₩64,410 + ₩420 - ₩230 = ₩64,600이다.
판매가 기준 기초재고는 ₩8,950, 당기 매입은 ₩94,100, 순인상액은 ₩900, 순인하액은 ₩700, 매출액은 ₩98,000, 종업원할인은 ₩2,000이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말재고가 당기 매입분에서 남은 것으로 보아 원가율 계산에서 기초재고를 제외한다.
저가기준 원가율에서는 순인상액은 분모에 포함하고 순인하액은 제외한다. 다만 판매가기준 기말재고를 구할 때에는 순인상액과 순인하액을 모두 반영한다.

NoteBase

### 사용할 공식

당기 원가율은 다음과 같다.
당기 원가율=당기 매입 관련 순원가당기 매입 판매가+순인상액
판매가기준 기말재고에서 종업원할인은 정상 판매가에서 줄어든 재고 감소분이므로 매출액과 함께 차감한다.
매출원가는 원가기준 판매가능상품액에서 기말재고 원가를 차감하여 구한다.

### 계산 과정

1. 판매가기준 기말재고를 계산한다.
₩8,950 + ₩94,100 + ₩900 - ₩700 - ₩98,000 - ₩2,000 = ₩3,250
2. 선입선출·저가기준의 당기 원가율을 계산한다.
(₩64,410 + ₩420 - ₩230) ÷ (₩94,100 + ₩900) = ₩64,600 ÷ ₩95,000 = 68%
3. 기말재고 원가를 계산한다.
₩3,250 × 68% = ₩2,210
4. 원가기준 판매가능상품액과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9,000 + ₩64,600 = ₩73,600
매출원가 = ₩73,600 - ₩2,210 = ₩71,390

### 선지 판단

① X — ₩61,200은 계산된 매출원가 ₩71,390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은 ₩61,200이며, 올바른 매출원가는 ₩71,390이다.
② X — ₩66,640은 판매가기준 기말재고 ₩3,250에 당기 원가율 68%를 적용해 기말재고 원가 ₩2,210을 구한 뒤 판매가능상품 원가에서 차감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은 ₩66,640이며, 올바른 매출원가는 ₩71,390이다.
③ X — ₩71,300은 선입선출법인데도 기초재고를 당기 매입분과 합쳐 평균원가율을 적용하면 근사적으로 나오는 값이다. 틀린 금액은 ₩71,300이며, 올바른 매출원가는 ₩71,390이다.
④ X — ₩71,374는 당기 원가율 68%와 기말재고 원가 ₩2,210을 정확히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틀린 금액은 ₩71,374이며, 올바른 매출원가는 ₩71,390이다.
⑤ O — 당기 원가율 68%를 적용한 기말재고 원가는 ₩2,210이고, 이를 판매가능상품 원가 ₩73,600에서 차감하면 매출원가는 ₩71,390이다.

###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원가율과 판매가기준 기말재고의 계산 범위를 같게 처리하는 것이다. 선입선출 원가율에서는 기초재고를 제외하고, 저가기준 원가율의 분모에서는 순인하액을 제외한다. 반면 판매가기준 기말재고 계산에서는 기초재고·순인상액·순인하액을 모두 반영하고 매출액과 종업원할인을 차감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판매가기준 기말재고를 구하고, 다음으로 원가흐름 가정과 원가율 산정 기준에 맞는 원가율을 별도로 계산한다. 그 원가율로 기말재고 원가를 구한 뒤 판매가능상품 원가에서 차감하면 매출원가가 된다.

**암기 포인트**

선입선출 원가율은 기초재고를 제외하고, 저가기준 원가율은 순인상액을 포함하되 순인하액은 제외한다.

NoteBase

**문 18.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취득원가 ₩550,000, 잔존가치 ₩10,000, 내용연수 10년)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x2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300,000으로 추정되어 손상을 인식하였다. 20x4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340,000으로 회복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20x2년 말 장부금액은 ₩300,000이다.

② 20x2년에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142,000이다.

③ 20x3년에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는 ₩36,250이다.

④ 20x4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180,500이다.

⑤ 20x4년에 인식하는 손상차손환입액은 ₩112,500이다.

**정답 5번**

### 출제 포인트

정액법 감가상각 후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이후 손상차손을 환입할 때 손상이 없었더라면 산정되었을 장부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취득원가는 550,000원, 잔존가치는 10,000원,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최초 연간 감가상각비는 54,000원이다. 20x2년 말 회수가능액은 300,000원이고, 20x4년 말 회수가능액은 340,000원이다. 손상차손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할 공식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이다. 손상차손은 손상 전 장부금액-회수가능액이다. 손상 후 감가상각비는 (손상 후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이다. 환입액은 회수가능액까지의 회복액과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까지의 회복액 중 작은 금액이다.

### 계산 과정

1. 최초 연간 감가상각비: $\frac{550,000-10,000}{10}=54,000$원이다.
2. 20x2년 말 손상 전 장부금액: $550,000-54,000\times2=442,000$원이다. 따라서 손상차손은 $442,000-300,000=142,000$원이고, 손상 후 장부금액은 300,000원이다.
3. 잔존내용연수 8년 동안의 연간 감가상각비: $\frac{300,000-10,000}{8}=36,250$원이다.
4. 20x4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 $300,000-36,250\times2=227,500$원이다. 손상이 없었다면 장부금액은 $550,000-54,000\times4=334,000$원이므로 환입 후 장부금액의 한도는 334,000원이다. 따라서 환입액은 $334,000-227,500=106,5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20x2년 말 손상 전 장부금액 442,000원을 회수가능액 300,000원으로 감액하므로 손상 후 장부금액은 300,000원이다.
② O. 20x2년 말 손상차손은 손상 전 장부금액 442,000원과 회수가능액 300,000원의 차이인 142,000원이다.
③ O. 손상 후 장부금액 300,000원에서 잔존가치 10,000원을 뺀 금액을 잔존내용연수 8년으로 나누면 20x3년 감가상각비는 36,250원이다.
④ O. 20x4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손상 전 2년분 108,000원과 손상 후 2년분 72,500원의 합계인 180,500원이다. 손상차손 142,000원은 감가상각누계액과 별도로 계산한다.
⑤ X. '손상차손환입액은 112,500원'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회수가능액 340,000원까지 단순 회복하면 112,500원이지만,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334,000원을 초과하여 환입할 수 없다. 올바른 손상차손환입액은 106,5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112,500원은 회수가능액 340,000원에서 환입 전 장부금액 227,500원을 바로 뺀 값이다. 손상차손 환입에서는 회수가능액뿐 아니라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이라는 상한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상 전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을 먼저 계산하고, 손상 후에는 변경된 장부금액과 잔존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한다. 환입 시점에는 환입 전 장부금액, 회수가능액,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구한 뒤 상한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손상차손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더라면 남았을 장부금액'을 넘을 수 없다.

NoteBase

**문 19. (주)세무는 20x1년 초 5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다. 20x2년 말 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 후 사채의 장부금액이 ₩84,000이 되었다면, 20x3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 차) | 이자비용 | 8,200 | 대) | 사채할인발행차금 | 2,000 |
|---|---|---|---|---|---|
| | | | | 현 금 | 6,200 |

① ₩86,200

② ₩86,600

③ ₩87,000

④ ₩87,200

⑤ ₩87,6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유효이자율법에서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만큼 사채의 장부금액이 증가한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x2년 이자비용은 8,200원, 현금으로 지급한 액면이자는 6,2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2,000원이다.
20x2년 말 장부금액은 84,000원이다.
20x3년 말 장부금액을 구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이자비용=기초 장부금액×유효이자율
할인차금 상각액=이자비용-현금이자
기말 장부금액=기초 장부금액+할인차금 상각액
할인발행 사채는 유효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이 현금이자보다 크므로 그 차액만큼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2년 말 장부금액 84,000원은 상각액 2,000원이 반영된 금액이므로, 20x2년 초 장부금액은 84,000원 - 2,000원 = 82,000원이다.
2. 유효이자율은 $8,200 / 82,000 = 10\%$이다.
3. 20x3년 이자비용은 $84,000 \times 10\% = 8,400$원이다.
4. 20x3년 할인차금 상각액은 8,400원 - 6,200원 = 2,200원이다.
5. 20x3년 말 장부금액은 84,000원 + 2,200원 = 86,2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된 20x3년 말 장부금액 86,200원과 일치한다.
② X — 86,6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86,200원이다.
③ X — 87,0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86,200원이다.
④ X — 87,2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86,200원이다.
⑤ X — 87,6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86,200원이다.

**오답 포인트**

20x2년의 이자비용 8,200원을 20x3년에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장부금액이 매년 변하므로 20x3년 이자비용은 새 기초 장부금액 84,000원에 유효이자율 10%를 적용한 8,400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직전 연도의 상각액을 이용해 그 연도 기초 장부금액과 유효이자율을 역산한다. 그다음 당기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비용과 할인차금 상각액을 차례로 구한다.

**암기 포인트**

할인발행 사채는 이자비용이 현금이자보다 크며, 그 차액만큼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을 향해 증가한다.

NoteBase

**문 20. (주)세무는 20x1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3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x3년 1월 1일 동 기계장치의 부품 교체에 ₩10,000을 지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20x2년 감가상각비와 20x3년 말 장부금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 부품교체는 자본적지출로 인식한다.
◯ 부품 교체시점에서의 회계추정 변경사항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잔존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500

① 20x2년 감가상각비: ₩9,000 / 20x3년 말 장부금액: ₩15,500
② 20x2년 감가상각비: ₩9,000 / 20x3년 말 장부금액: ₩17,100
③ 20x2년 감가상각비: ₩9,750 / 20x3년 말 장부금액: ₩15,500
④ 20x2년 감가상각비: ₩9,750 / 20x3년 말 장부금액: ₩17,100
⑤ 20x2년 감가상각비: ₩12,000 / 20x3년 말 장부금액: ₩17,1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연수합계법을 적용한 20x2년 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산하고, 부품 교체 시점의 장부금액에 자본적지출을 더한 뒤 변경된 추정에 따라 전진적으로 감가상각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30,000원
최초 잔존가치: 0원
최초 내용연수: 4년
취득일: 20x1년 4월 1일
최초 감가상각방법: 연수합계법
20x3년 1월 1일 자본적지출: 10,000원
변경 후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변경 후 잔존내용연수: 5년
변경 후 잔존가치: 500원
주의할 조건: 20x2년은 연수합계법의 첫째 연도분 3개월과 둘째 연도분 9개월이 걸쳐 있으므로 각각 월할 계산한다.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20x3년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연수합계법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잔존가치)× (잔존내용연수)/(내용연수의 연수합계)× (사용월수)/(12)
로 계산한다. 4년의 연수합계는 4 + 3 + 2 + 1 = 10이다.

회계추정 변경 후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변경일의 장부금액+자본적지출-변경 후 잔존가치)/(변경 후 잔존내용연수)
로 계산한다. 부품 교체액은 자본적지출이므로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변경된 추정은 과거 금액을 고치지 않고 변경 시점 이후에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20x1년 감가상각비
30,000× (4)/(10)× (9)/(12)=9,000원

2. 20x2년 감가상각비
20x2년 1~3월에는 첫째 연도 상각률 4/10, 4~12월에는 둘째 연도 상각률 3/10을 적용한다.
30,000× (4)/(10)× (3)/(12)+30,000× (3)/(10)× (9)/(12)=3,000+6,750=9,750원

3. 20x3년 1월 1일 부품 교체 직전 장부금액
30,000-9,000-9,750=11,250원

4. 자본적지출 반영 후 감가상각대상액과 20x3년 감가상각비
11,250+10,000-500=20,750원
20,750÷5=4,150원

5. 20x3년 말 장부금액
11,250+10,000-4,150=17,100원

NoteBase

### 선지 판단

① X — 20x2년 감가상각비 9,000원과 20x3년 말 장부금액 15,500원이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각각 9,750원과 17,100원이다.
② X — 20x3년 말 장부금액 17,100원은 맞지만, 20x2년 감가상각비 9,000원이 틀렸다. 올바른 20x2년 감가상각비는 9,750원이다.
③ X — 20x2년 감가상각비 9,750원은 맞지만, 20x3년 말 장부금액 15,500원이 틀렸다. 올바른 장부금액은 17,100원이다.
④ O — 20x2년 감가상각비는 9,750원이고, 20x3년 말 장부금액은 17,100원이다.
⑤ X — 20x3년 말 장부금액 17,100원은 맞지만, 20x2년 감가상각비 12,000원이 틀렸다. 12,000원은 첫째 연도 상각률 4/10을 20x2년 전체에 적용한 값이며, 올바르게는 첫째 연도분 3개월과 둘째 연도분 9개월을 나누어 계산한 9,750원이다.

### 오답 포인트

20x2년 전체에 하나의 연수합계법 상각률을 적용하면 9,000원이나 12,000원 같은 오답이 나온다. 취득일이 4월 1일이므로 상각연도 경계도 다음 해 4월 1일에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20x3년에는 자본적지출 10,000원을 장부금액에 더하고, 새 잔존가치 500원을 뺀 금액을 잔존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수합계법의 달력연도 감가상각비는 취득월을 기준으로 상각연도별 적용 개월 수를 먼저 나눈다. 추정 변경 시점에는 직전 장부금액을 확정하고 자본적지출을 반영한 뒤, 변경된 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감가상각방법으로 이후 기간만 다시 계산한다.

### 암기 포인트

연수합계법은 취득월 기준으로 월할하고, 추정 변경은 변경일의 장부금액에서 전진 적용한다. 자본적지출은 변경일 장부금액에 더한다.

NoteBase

**문 21. (주)세무는 공장건물을 20x1년 1월 1일 착공, 20x2년 10월 말에 완공하였다. 공장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1년 후급조건이며 월할계산한다.)**

○ 공사비 지출

| 일자 | 금액 |
|---|---|
| 20×1년 1월 1일 | ₩10,000 |
| 20×1년 7월 1일 | 7,000 |

○ 차입금 현황

| 종류 | 금액 | 이자율 | 차입기간 |
|---|---|---|---|
| 특정차입금 | ₩10,000 | 5% | 20×1년 1월 1일 ~ 20×2년 12월 31일 |
| 일반차입금A | 1,000 | 8% | 20×0년 8월 1일 ~ 20×2년 7월 31일 |
| 일반차입금B | 3,000 | 6% | 20×1년 9월 1일 ~ 20×3년 10월 31일 |

① ₩640

② ₩728

③ ₩745

④ ₩760

⑤ ₩99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적격자산의 평균누적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되, 일반차입금 관련 자본화액은 그 기간에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특정차입금은 10,000원, 연 5%이며 20×1년 내내 존재한다. 공사비는 1월 1일 10,000원, 7월 1일 7,000원이 지출되었다. 일반차입금 A의 20×1년 이자는 80원이고, 9월 1일 차입한 일반차입금 B의 20×1년 이자는 60원이다. 따라서 20×1년에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원가는 모두 140원이다.

NoteBase

### 사용할 공식

특정차입원가: $10{,}000 \times 5\% \times \frac{12}{12} = 500$
일반차입금 관련 평균누적지출액: $7{,}000 \times \frac{6}{12} = 3{,}500$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frac{1{,}000 \times 8\% \times \frac{12}{12} + 3{,}000 \times 6\% \times \frac{4}{12}}{1{,}000 \times \frac{12}{12} + 3{,}000 \times \frac{4}{12}} = 7\%$
일반차입원가 자본화액: $\min(3{,}500 \times 7\%,\ 140) = 140$
일반차입금에 적용한 계산액은 245원이지만,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원가 140원이 상한이므로 140원만 자본화한다.

### 계산 과정

1. 1월 1일 지출액 10,000원은 특정차입금 10,000원에 대응하므로 특정차입원가 500원을 계산한다.
2. 7월 1일 추가 지출액 7,000원의 6개월 가중평균액은 3,500원이다.
3. 일반차입금의 기간가중 자본화이자율은 7%이므로 산식상 일반차입원가는 245원이다.
4. 245원은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원가 140원을 초과하므로 자본화액을 140원으로 제한한다.
5. 총 자본화 차입원가는 $500 + 140 = 640$원이다.

### 선지 판단

① O — 특정차입원가 500원과 상한 적용 후 일반차입원가 140원의 합계가 640원이므로 옳다.
② X — '₩728'은 일반차입금 B가 9월 1일에 차입되었다는 기간 차이를 무시하고 액면금액만으로 가중평균이자율을 구할 때 나오는 값이다. 차입기간을 반영하고 실제 발생 일반차입원가 상한을 적용하면 '₩640'이다.
③ X — '₩745'는 일반차입금 적용액 245원을 상한 없이 전액 더한 값이다. 실제 일반차입원가는 140원이므로 올바르게는 '₩640'이다.
④ X — '₩760'은 일반차입금 B의 1년분 이자 180원을 전부 포함한 값이다. B는 9월 1일에 차입되었으므로 20×1년 이자는 4개월분 60원이며, 올바르게는 '₩640'이다.
⑤ X — '₩990'은 7월 1일 지출액 7,000원에 7%를 1년 전체로 적용하고 상한도 무시한 값이다. 6개월의 기간가중과 실제 발생 일반차입원가 상한을 반영하면 '₩640'이다.

### 오답 포인트

③처럼 평균누적지출액 3,500원에 7%를 곱한 245원을 그대로 자본화하면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원가 140원을 초과한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자본화이자율 계산이 아니라 실제 발생 차입원가라는 상한을 빠뜨리는 데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정차입원가를 먼저 계산하고, 초과 지출액에 기간가중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한 뒤, 일반차입금 계산액과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원가 중 작은 금액을 선택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일반차입원가 자본화액은 '평균누적지출액 × 자본화이자율'과 '실제 발생 일반차입원가' 중 작은 금액이다.

NoteBase

**문 22. (주)세무의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주당 발행가 ₩6,500)와 관련된 거래가 다음과 같이 발생했을 때, 20x1년 4월 30일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회계처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 거래일자 | 주식수 | 주당 재취득금액 | 주당 재발행금액 |
|---|---|---|---|
| 20×1년 3월 1일 | 50 | ₩6,800 | - |
| 20×1년 4월 1일 | 20 | 5,600 | - |
| 20×1년 4월 21일 | 30 | - | ₩6,900 |
| 20×1년 4월 30일 | 10 | - | 4,800 |

① (차변): 현금 48,000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 자기주식처분손실 17,000 / (대변): 자기주식 68,000

② (차변): 현금 48,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 / (대변): 자기주식 68,000

③ (차변): 현금 48,000 자기주식처분손실 8,000 / (대변): 자기주식 56,000

④ (차변): 현금 48,000 감자차익 2,000 / (대변): 자기주식 50,000

⑤ (차변): 현금 48,000 감자차손 2,000 / (대변): 자기주식 5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기주식을 선입선출법으로 재발행할 때 처분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을 계산하고,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먼저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3월 1일: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6,800원에 취득한다.
4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주당 5,600원에 취득한다.
4월 21일: 자기주식 30주를 주당 6,900원에 재발행한다.
4월 30일: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4,800원에 재발행한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므로 먼저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처분한 것으로 본다.

**사용할 공식**

자기주식 처분손익=재발행대금-처분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
재발행대금이 장부금액보다 크면 자기주식처분이익, 작으면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과 먼저 상계하고, 초과분만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처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4월 21일에는 가장 먼저 취득한 30주를 처분하므로 장부금액은 30 × 6,800 = 204,000원이고 재발행대금은 30 × 6,900 = 207,000원이다. 따라서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원이 발생한다.
2. 4월 21일 이후에는 3월 1일 취득분 20주와 4월 1일 취득분 20주가 남는다.
3. 4월 30일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3월 1일 취득분 중 10주를 처분하므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은 10 × 6,800 = 68,000원이고 현금 수입은 10 × 4,800 = 48,000원이다. 총 처분손실은 20,000원이다.
4.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원을 먼저 차감하면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20,000 − 3,000 = 17,000원이다. 따라서 차변은 현금 48,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17,000원이고 대변은 자기주식 68,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현금 48,000원과 자기주식 장부금액 68,000원의 차이 20,000원 중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원을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 17,000원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처리하므로 옳다.
② X.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원'이 틀렸다.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원을 먼저 상계해야 하므로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원과 자기주식처분손실 17,000원을 차변에 기록해야 한다.
③ X. '자기주식 56,000원'이 틀렸다. 선입선출법에서는 4월 30일 처분한 10주가 주당 6,800원인 3월 1일 취득분이므로 자기주식 장부금액은 68,000원이며, 3,000원을 상계한 뒤의 자기주식처분손실은 17,000원이다.
④ X. '감자차익 2,000원'과 '자기주식 50,000원'이 틀렸다. 이 거래는 자기주식의 소각이 아니라 재발행이므로 감자차익을 사용하지 않으며, 액면금액 50,000원이 아니라 취득원가 68,000원을 자기주식에서 제거해야 한다.
⑤ X. '감자차손 2,000원'과 '자기주식 50,000원'이 틀렸다. 재발행 거래에는 감자차손이 아니라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적용하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자기주식 장부금액 68,000원을 제거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4월 30일 거래만 보면 처분손실은 20,000원이지만, 4월 21일에 생긴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원을 먼저 상계해야 한다. 또한 자기주식 재발행에서는 액면금액이 아니라 취득원가로 기록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을 제거하며, 감자차익·감자차손은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된 계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기주식 재발행 문제는 취득원가 흐름에 따라 처분 주식의 장부금액을 먼저 정하고, 재발행대금과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한 뒤, 처분손실이면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의 상계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기주식 재발행은 액면금액이 아니라 취득원가를 제거하며, 처분손실은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먼저 상계한다.

NoteBase

**문 23. 자본 및 자본유지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②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 하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③ 자본을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한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는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된다.

④ 재무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며, 실물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⑤ 자본을 실물생산능력으로 정의한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로 처리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무적 자본과 실물자본의 정의, 각 자본유지개념에서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측정기준과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무적 자본: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구매력으로 보는 개념이며, 순자산 또는 지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재무자본유지는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금액이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기초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이익으로 본다. 특정 측정기준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실물자본: 자본을 기업의 실물생산능력 또는 영업능력으로 보는 개념이다. 실물자본유지는 기말의 실물생산능력이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기초의 실물생산능력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이익으로 보며, 현행원가기준을 요구한다.
결정적인 차이는 자산·부채의 가격변동을 이익으로 볼 것인지, 자본유지조정으로 보아 자본에 포함할 것인지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자본유지개념은 유지해야 할 자본을 먼저 정하여 그 초과분만 이익으로 측정하게 한다. 따라서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단순한 투자회수를 구분하는 준거기준이 된다.
② O. 재무적 자본은 투자된 화폐액 또는 구매력으로 파악하며, 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의 순자산 또는 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③ O. 불변구매력 단위의 재무자본유지에서는 일반물가상승분만큼은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유지조정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자산가격 상승분 중 일반물가상승률을 초과한 부분만 이익으로 본다.
④ X. 틀린 부분은 재무자본유지가 현행원가기준을 요구하고 실물자본유지는 특정 측정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실물자본유지개념이 현행원가기준의 적용을 요구하며,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⑤ O. 실물자본유지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가격변동을 실물생산능력 측정치의 변동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 가격변동은 이익이 아니라 자본유지조정으로서 자본의 일부로 처리된다.

### 오답 포인트

④는 두 자본유지개념과 측정기준의 관계를 서로 뒤바꾼 선지이다. '실물'은 현재의 생산능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현행원가와 연결되고, '재무'는 명목화폐 단위 또는 불변구매력 단위 중 무엇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측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유지 대상이 화폐액·구매력이면 재무자본, 생산능력이면 실물자본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측정기준을 묻는 선지에서는 '실물자본유지 → 현행원가기준 필요', '재무자본유지 → 특정 측정기준을 강제하지 않음'의 대응을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재무는 돈·구매력, 실물은 생산능력이다. 현행원가가 반드시 필요한 쪽은 실물자본유지이다.

NoteBase

**문 24. (주)세무는 20x1년 초 다음과 같은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으며, 20x2년 초 전환사채 전부를 ₩1,070,000(상환시점의 공정가치)에 조기상환하였다. 이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현가계수 표를 이용하며, 현가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4%
○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 연 8%
○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 만기상환일: 20×3년 12월 31일
○ 조기상환일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 연 15%
○ 상환할증금: 없음
○ 발행 시 주식전환 옵션은 전환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
○ 현가계수

| 할인율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 8% | 15% | 8% | 15% |
| 2 | 0.85733 | 0.75614 | 1.78326 | 1.62571 |
| 3 | 0.79383 | 0.65752 | 2.57710 | 2.28323 |

① 발행 당시 전환권대가는 ₩103,086이다.

② 20x1년도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31,753이다.

③ 20x2년 초 장부금액은 ₩928,667이다.

④ 20x2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일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821,168이다.

⑤ 20x2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사채상환손실은 ₩38,247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전환사채 발행 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고, 조기상환 시 지급대가를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와 자본요소에 배분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금액과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1,000,000, 표시이자율은 연 4%, 발행 당시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은 연 8%이다. 따라서 매년 지급하는 이자는 ₩40,000이고 만기는 3년이다. 20x2년 초 조기상환 시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은 연 15%이며, 남은 기간은 2년이다. 조기상환 지급액은 ₩1,070,000이다.

NoteBase

### 사용할 공식

발행 시 부채요소는 이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원금의 현재가치이고, 전환권대가는 발행가액-부채요소이다. 유효이자비용은 기초 부채 장부금액×유효이자율이며,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유효이자비용-표시이자이다. 조기상환 때에는 지급대가 중 부채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건의 일반사채 공정가치로 정하고, 그 금액과 부채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계산 과정

1. 발행 시 부채요소: $40,000 \times 2.57710 + 1,000,000 \times 0.79383 = 896,914$원이므로 전환권대가는 ₩1,000,000-₩896,914=₩103,086이다.
2. 20x1년 유효이자비용은 $896,914 \times 8\% = 71,753.12$원이므로 반올림하면 ₩71,753이다.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71,753-₩40,000=₩31,753이고, 20x2년 초 부채 장부금액은 ₩896,914+₩31,753=₩928,667이다.
3. 조기상환일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남은 2년의 현금흐름을 15%로 할인하여 $40,000 \times 1.62571 + 1,000,000 \times 0.75614 = 821,168.4$원, 즉 ₩821,168이다.
4. 부채요소에 배분된 지급대가 ₩821,168이 부채 장부금액 ₩928,667보다 ₩107,499 작으므로 사채상환이익은 ₩107,499이다. 나머지 지급대가 ₩248,832은 자본요소의 재취득에 해당하여 자본으로 처리한다.

### 선지 판단

① O. 발행 시 부채요소가 ₩896,914이므로 발행가액과의 차이인 전환권대가는 ₩103,086이다.
② O. 20x1년 유효이자비용 ₩71,753에서 현금이자 ₩40,000을 빼면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31,753이다.
③ O. 발행 시 부채 장부금액 ₩896,914에 전환권조정 상각액 ₩31,753을 더하면 20x2년 초 장부금액은 ₩928,667이다.
④ O. 조기상환일에 남은 원금과 이자를 15%로 할인하면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821,168이다.
⑤ X. '사채상환손실은 ₩38,247'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조기상환 지급액 전체에서 기존 부채 장부금액과 발행 시 전환권대가를 단순 차감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는 지급대가 중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인 ₩821,168과 부채 장부금액 ₩928,667을 비교하므로 ₩107,499의 사채상환이익을 인식한다.

### 오답 포인트

⑤의 ₩38,247은 ₩1,070,000-₩928,667-₩103,086으로 계산한 값이다. 이는 조기상환 지급액을 먼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해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하고, 발행 당시 자본요소를 그대로 차감한 데서 생긴 오답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행 시에는 시장수익률로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잔액을 자본요소로 정한다. 조기상환 시에는 남은 현금흐름을 조기상환일의 일반사채 시장수익률로 할인하여 지급대가 중 부채 몫을 구한 뒤, 그 금액과 부채 장부금액의 차이만 당기손익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전환사채는 '발행 시 부채 먼저, 조기상환 시에도 부채 공정가치 먼저'이며, 부채 공정가치와 부채 장부금액의 차이만 당기손익이다.

NoteBase

**문 25. 농림어업 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의 인식시점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② 생물자산을 이전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면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당해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③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④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와 같이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식물이 아니다.

⑤ 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는 생산용식물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 원칙,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 생산용식물의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물자산은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며, 원칙적으로 순공정가치인 공정가치에서 매각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생산용식물은 수확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수확물을 생산하며, 부수적인 폐물 매각 외에는 그 식물 자체를 수확물로 판매할 가능성이 희박한 살아 있는 식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때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도 명백히 신뢰성이 없다면, 공정가치 측정의 예외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② O. 생물자산을 이미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면 이후 처분할 때까지 계속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일단 공정가치 측정으로 전환한 뒤 다시 원가 측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③ O.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으로 생긴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④ O. 목재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는 식물 자체가 수확물로 수확되므로 생산용식물이 아니다.
⑤ X. 틀린 표현은 '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는 생산용식물이다'이다. 과일뿐 아니라 나무 자체도 목재로 수확할 목적이라면 식물 자체를 수확물로 판매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므로 생산용식물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는 생산용식물이 아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과일을 여러 기간 생산한다는 사실만 보고 ⑤를 생산용식물로 판단하기 쉽다. 생산용식물 여부는 과일 생산 기간뿐 아니라 나무 자체를 목재로 수확·판매할 목적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식물 자체를 수확물로 판매할 가능성이 부수적인 폐물 매각 수준인지 확인한다. 식물 자체를 목재 등으로 본격 수확할 목적이면 생산용식물이 아니고, 식물은 유지한 채 여러 기간 수확물만 얻는다면 생산용식물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열매만 반복 수확하면 생산용식물, 나무 자체도 수확하면 생산용식물이 아니다.

NoteBase

**문 26.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x1년에는 4,000단위를 생산하였고, 20x2년에는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5,000 많았다. 20x2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2년도 기초제품 수량은? (단, 20x1년과 20x2년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항목 | | 수량/금액 |
|---|---|---|
| 기초제품 수량 | | ( )단위 |
| 생산량 | | 4,000단위 |
| 기말제품 수량 | | 1,200단위 |
| 제품 단위당 | 판매가격 | ₩250 |
| | 직접재료원가 | 80 |
| | 직접노무원가 | 40 |
| | 변동제조간접원가 | 30 |
| | 변동판매관리비 | 10 |
|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 | ₩200,000 |
| 고정판매관리비(총액) | | 100,000 |

① 500단위

② 650단위

③ 700단위

④ 950단위

⑤ 1,700단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가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의 변동액과 같다는 원리를 이용해 기초제품 수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NoteBase

### 조건 정리

20x2년 생산량은 4,000단위, 기말제품 수량은 1,200단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총 200,000원이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보다 25,000원 많다. 20x1년과 20x2년의 원가구조가 동일하므로 두 연도의 제품에 적용되는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도 동일하다. 구해야 할 값은 20x2년 기초제품 수량이다.

### 사용할 공식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고정제조간접원가 총액생산량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기말제품 수량-기초제품 수량)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제품원가에 포함되어 재고에 이연되지만, 변동원가계산에서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재고 증감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두 영업이익이 달라진다.

### 계산 과정

1.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0원 ÷ 4,000단위 = 50원/단위이다.
2. 기초제품 수량을 $B$라고 하면, 25,000원 = 50원/단위 × (1,200단위 - $B$)이다.
3. 따라서 재고 증가량은 25,000원 ÷ 50원/단위 = 500단위이고, $B = 1,200 - 500 = 700$단위이다.

### 선지 판단

① X — 기초제품이 500단위라면 재고가 700단위 증가하므로 이익 차이는 50원/단위 × 700단위 = 35,000원이 된다. 500단위는 기초제품 수량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계산된 재고 증가량이며, 올바른 기초제품 수량은 700단위이다.

② X — 기초제품이 650단위라면 재고가 550단위 증가하여 이익 차이는 27,500원이 된다. 제시된 25,000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올바른 값은 700단위이다.

③ O — 기초제품이 700단위이면 재고가 500단위 증가하고, 50원/단위 × 500단위 = 25,000원이므로 주어진 이익 차이와 일치한다.

④ X — 기초제품이 950단위라면 재고가 250단위 증가하여 이익 차이는 12,500원이 된다. 제시된 25,000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올바른 값은 700단위이다.

⑤ X — 기초제품이 1,700단위라면 재고가 500단위 감소하여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보다 25,000원 적어진다. 문제의 이익 관계와 반대이며, 올바른 값은 700단위이다.

### 오답 포인트

①의 500단위는 기초제품 수량이 아니라 기말제품과 기초제품의 수량 차이이다. 또한 '전부원가계산 이익이 더 많다'는 말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므로 기말제품 수량에서 재고 증가량을 빼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고정제조간접원가 총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구한다. 다음으로 두 이익의 차이를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로 나누어 재고 증감량을 구한다. 전부원가계산 이익이 더 크면 재고 증가, 더 작으면 재고 감소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부원가계산 이익 - 변동원가계산 이익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재고 증가량이다.

NoteBase

**문 27.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기본원가(prime costs)의 50%를 예정배부한다.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한다. 9월의 기본원가, 매출액과 배부차이 조정 후 기말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9월의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율이 80%일 때, 배부차이는? (단, 기초재고자산은 없다.)**

| | | | |
|---|---|---|---|
| 기본원가 | ₩750,000 | 매출액 | ₩1,000,000 |
| 기말재공품 | 120,000 | 기말제품 | 180,000 |

① ₩10,000 과대배부

② ₩15,000 과소배부

③ ₩15,000 과대배부

④ ₩25,000 과소배부

⑤ ₩25,000 과대배부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예정배부 제조간접원가를 포함한 조정 전 총원가와 배부차이 조정 후 총원가를 비교하여 배부차이의 금액과 과대·과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본원가: 750,000원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기본원가의 50%
매출액: 1,000,000원
조정 후 매출원가율: 80%
조정 후 기말재공품: 120,000원
조정 후 기말제품: 180,000원
기초재고자산은 없다.

NoteBase

### 사용할 공식

예정배부 제조간접원가=기본원가× 50\%
조정 후 매출원가=매출액×매출원가율
배부차이=조정 전 총원가-조정 후 총원가

기초재고자산이 없으므로 당기에 발생한 조정 전 총원가는 기본원가와 예정배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한 뒤에는 그 총원가가 조정 후 매출원가·기말재공품·기말제품에 나뉘어 남으므로, 두 총액의 차이가 배부차이이다.

### 계산 과정

1. 예정배부 제조간접원가는 750,000 × 50% = 375,000원이므로 조정 전 총원가는 750,000 + 375,000 = 1,125,000원이다.
2. 조정 후 매출원가는 1,000,000 × 80% = 800,000원이다.
3. 조정 후 총원가는 800,000 + 120,000 + 180,000 = 1,100,000원이다.
4. 조정 전 총원가가 조정 후 총원가보다 1,125,000 − 1,100,000 = 25,000원 더 크다. 예정배부액이 실제원가를 반영한 조정 후 금액보다 큰 것이므로 25,000원 과대배부이다.

### 선지 판단

① X — 과대배부라는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10,000원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25,000원 과대배부이다.
② X — 15,000원도 아니고 과소배부도 아니다. 올바르게는 25,000원 과대배부이다.
③ X — 과대배부라는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15,000원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25,000원 과대배부이다.
④ X — 금액 25,000원은 맞지만 과소배부가 아니라 과대배부이다. 올바르게는 25,000원 과대배부이다.
⑤ O — 조정 전 총원가 1,125,000원이 조정 후 총원가 1,100,000원보다 25,000원 크므로 25,000원 과대배부이다.

### 오답 포인트

배부차이는 조정 전 총원가와 조정 후 총원가의 차이로 판단한다. 조정 전 금액이 더 크면 제조간접원가가 실제보다 많이 배부된 것이므로 과대배부이다. ④처럼 차액 25,000원만 맞히고 방향을 과소배부로 뒤집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본원가에 예정배부율을 적용하여 조정 전 총원가를 구하고, 다음으로 매출액에 매출원가율을 적용한 조정 후 매출원가와 조정 후 재고를 합산한다. 마지막으로 조정 전 총원가가 더 크면 과대배부, 더 작으면 과소배부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조정 전 총원가가 조정 후 총원가보다 크면 과대배부, 작으면 과소배부이다.

NoteBase

**문 28. (주)세무는 원가행태를 추정하기 위해 고저점법을 적용한다. (주)세무의 경영자는 추정된 원가함수를 토대로 7월의 목표이익을 ₩167,500으로 설정하였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추정 목표매출액은? (단, 당월 생산된 제품은 당월에 전량 판매되고, 추정 목표매출액은 관련범위 내에 있다.)**

| 월 | 총원가 | 총매출액 |
|---|---|---|
| 3월 | ₩887,000 | ₩980,000 |
| 4월 | 791,000 | 855,000 |
| 5월 | 985,500 | 1,100,000 |
| 6월 | 980,000 | 1,125,000 |

① ₩1,160,000

② ₩1,165,000

③ ₩1,170,000

④ ₩1,180,000

⑤ ₩1,200,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저점법으로 변동원가율과 고정원가를 추정한 뒤,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매출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고점은 매출액이 가장 큰 6월로 총매출액 1,125,000원, 총원가 980,000원이다. 저점은 매출액이 가장 작은 4월로 총매출액 855,000원, 총원가 791,000원이다. 목표이익은 167,500원이며, 당월 생산량이 전량 판매되므로 추정한 원가함수를 매출액 기준 손익식에 적용할 수 있다.

**사용할 공식**

변동원가율은 (고점 총원가-저점 총원가)/(고점 매출액-저점 매출액)이다. 고정원가는 총원가-(매출액×변동원가율)이고, 공헌이익률은 1-변동원가율이다. 목표매출액은 (고정원가+목표이익)/(공헌이익률)이다. 고저점법으로 원가함수를 먼저 추정해야 목표이익에 필요한 공헌이익과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 공식들을 사용한다.

NoteBase

### 계산 과정

1. 변동원가율을 계산한다.

$$\frac{980{,}000 - 791{,}000}{1{,}125{,}000 - 855{,}000} = \frac{189{,}000}{270{,}000} = 0.7$$

2. 고정원가를 계산한다.

$$980{,}000 - (1{,}125{,}000 \times 0.7) = 192{,}500$$

3. 공헌이익률은 $1 - 0.7 = 0.3$이다.

4. 목표매출액을 계산한다.

$$\frac{192{,}500 + 167{,}500}{0.3} = 1{,}200{,}000$$

따라서 추정 목표매출액은 1,200,000원이다.

### 선지 판단

① X — 매출액이 1,160,000원이면 추정이익은 $1{,}160{,}000 \times 0.3 - 192{,}500 = 155{,}500$원이므로 목표이익에 미달한다. '1,160,000원'은 '1,2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매출액이 1,165,000원이면 추정이익은 $1{,}165{,}000 \times 0.3 - 192{,}500 = 157{,}000$원이므로 목표이익에 미달한다. '1,165,000원'은 '1,2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매출액이 1,170,000원이면 추정이익은 $1{,}170{,}000 \times 0.3 - 192{,}500 = 158{,}500$원이므로 목표이익에 미달한다. '1,170,000원'은 '1,2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매출액이 1,180,000원이면 추정이익은 $1{,}180{,}000 \times 0.3 - 192{,}500 = 161{,}500$원이므로 목표이익에 미달한다. '1,180,000원'은 '1,2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매출액이 1,200,000원이면 공헌이익은 360,000원이고, 여기서 고정원가 192,500원을 차감한 이익이 167,500원이 되어 목표이익과 일치한다.

### 오답 포인트

고저점은 총원가가 가장 큰 달과 작은 달이 아니라 조업도를 나타내는 매출액이 가장 큰 달과 작은 달을 선택한다. 또한 목표매출액 계산의 분자에는 목표이익만 넣는 것이 아니라 고정원가와 목표이익을 합하고, 분모에는 변동원가율 0.7이 아니라 공헌이익률 0.3을 사용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출액 기준 고점·저점 선정 → 변동원가율 계산 → 고정원가 계산 → 공헌이익률 계산 → 목표매출액 계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마지막에는 목표매출액에 공헌이익률을 곱하고 고정원가를 차감하여 목표이익과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 암기 포인트

고저점법은 조업도 차이로 변동원가율을 구하고, 목표매출액은 (고정원가+목표이익) ÷ 공헌이익률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29.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x1년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총완성품환산량은 20,000단위, 전환원가에 대한 총완성품환산량은 18,000단위, 완성품 수량은 15,000단위이다. 20x1년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① 50%

② 60%

③ 75%

④ 80%

⑤ 90%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직접재료 완성품환산량으로 기말재공품 수량을 먼저 구한 뒤,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으로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를 구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말재공품도 직접재료 기준으로는 100% 완성된 것으로 본다.
직접재료 총완성품환산량: 20,000단위
전환원가 총완성품환산량: 18,000단위
완성품 수량: 15,000단위
구해야 할 값: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

### 사용할 공식

직접재료 총완성품환산량=완성품 수량+기말재공품 수량
전환원가 총완성품환산량=완성품 수량+기말재공품 수량×전환원가 완성도
가중평균법에서는 당기 완성품을 100% 완성된 환산량으로 포함한다. 또한 직접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말재공품 수량은 직접재료 완성품환산량과 같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말재공품 수량을 구한다.
20,000=15,000+기말재공품 수량
따라서 기말재공품은 5,000단위이다.

2.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을 구한다.
18,000-15,000=3,000단위

3. 전환원가 완성도를 구한다.
전환원가 완성도=3,0005,000×100\%=60\%

**선지 판단**

① X — 50%를 적용하면 기말재공품 전환원가 환산량은 2,500단위이고 총완성품환산량은 17,500단위가 되어 주어진 18,000단위와 다르다. 올바른 완성도는 60%이다.
② O — 기말재공품 5,000단위 중 전환원가 환산량이 3,000단위이므로 완성도는 60%이다.
③ X — 75%를 적용하면 기말재공품 전환원가 환산량은 3,750단위이고 총완성품환산량은 18,750단위가 된다. 올바른 완성도는 60%이다.
④ X — 80%를 적용하면 기말재공품 전환원가 환산량은 4,000단위이고 총완성품환산량은 19,000단위가 된다. 올바른 완성도는 60%이다.
⑤ X — 90%를 적용하면 기말재공품 전환원가 환산량은 4,500단위이고 총완성품환산량은 19,500단위가 된다. 올바른 완성도는 60%이다.

**오답 포인트**

직접재료 총완성품환산량 20,000단위를 기말재공품 수량으로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완성품 15,000단위를 차감한 5,000단위가 기말재공품 수량이다. 전환원가도 같은 방식으로 18,000단위 전체를 분자로 쓰지 않고, 완성품 15,000단위를 차감한 3,000단위만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환산량으로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료가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문제에서는 재료 환산량에서 완성품 수량을 빼 기말재공품 수량을 구한다. 이어 전환원가 환산량에서 완성품 수량을 뺀 값을 기말재공품 수량으로 나누면 전환원가 완성도가 된다.

**암기 포인트**

초기 전량 투입 재료: 재료 환산량으로 기말재공품 수량을 구하고, 전환원가 환산량으로 완성도를 구한다.

NoteBase

**문 30.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전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x1년과 20x2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2년도 매출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항목 | 20×1년 | 20×2년 |
|---|---|---|
| 제품 생산량 | 1,500단위 | 1,750단위 |
| 제품 판매량 | 1,200단위 | (  )단위 |
| 기말제품 수량 | (  )단위 | 150단위 |
| 제품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38 | ₩40 |
| 고정제조간접원가 | ₩48,000 | ₩70,000 |

① ₩147,000

② ₩148,000

③ ₩148,600

④ ₩149,000

⑤ ₩149,4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전부원가계산에서 연도별 제품 단위원가를 구한 뒤, 선입선출법에 따라 20x2년에 먼저 판매된 기초제품과 당기제품의 원가를 구분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x1년 생산량은 1,500단위, 판매량은 1,200단위이므로 20x1년 말 제품은 300단위이다. 이 300단위가 20x2년 기초제품이 된다.
20x2년 생산량은 1,750단위이고 기말제품은 150단위이다. 따라서 20x2년 판매량은 1,900단위이다.
전부원가계산에서는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모두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선입선출법에서는 20x2년 판매량 1,900단위 중 기초제품 300단위를 먼저 판매하고, 나머지 1,600단위를 20x2년 생산제품에서 판매한 것으로 본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연도별 제품 단위원가는 다음과 같다.
제품 단위원가=단위당 변동제조원가+고정제조간접원가생산량
선입선출법에 따른 20x2년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매출원가=기초제품 판매원가+당기제품 판매원가
전부원가계산이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생산량에 배부하고, 선입선출법이므로 서로 다른 연도의 단위원가를 판매 순서에 맞게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20x1년 말 제품수량을 계산한다.
1,500-1,200=300단위
2. 20x1년 제품 단위원가를 계산한다.
38+48,0001,500=38+32=70원
3. 20x2년 제품 단위원가를 계산한다.
40+70,0001,750=40+40=80원
4. 20x2년 판매량을 계산한다.
300+1,750-150=1,900단위
5.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초제품 300단위와 당기제품 1,600단위의 원가를 합산한다.
300×70+(1,900-300)×80=21,000+128,000=149,000원

**선지 판단**

① X — 147,000원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149,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47,000원은 149,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기초제품 300단위의 원가 21,000원과 당기제품 1,600단위의 원가 128,000원을 합하면 149,000원이므로 148,000원은 틀리다. 148,000원은 149,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연도별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포함한 단위원가는 각각 70원과 80원이고, 이를 FIFO 판매수량에 적용한 결과는 149,000원이다. 따라서 148,600원은 149,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300단위에 20x1년 단위원가 70원을, 1,600단위에 20x2년 단위원가 80원을 적용하면 매출원가는 149,000원이다.
⑤ X — 149,400원은 위의 FIFO 계산 결과보다 400원 크다. 틀린 금액 149,400원은 149,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20x2년 판매량 전부에 20x2년 단위원가를 적용하면 안 된다. 선입선출법에서는 20x1년 말에 남은 300단위가 20x2년에 먼저 판매되므로 이 수량에는 20x1년 단위원가 70원을 적용한다. 또한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각 연도의 고정제조간접원가를 해당 연도의 생산량으로 나눈 금액도 제품 단위원가에 포함한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연도의 전부원가 단위원가를 따로 계산한다. 다음으로 수량흐름을 이용해 판매량을 구하고, FIFO에서는 기초재고부터 소진한 뒤 남은 판매수량에 당기 단위원가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기말재고 검산을 하면 기초제품원가 21,000원과 당기제품원가 140,000원의 합계 161,000원에서 기말제품 150단위의 원가 12,000원을 뺀 149,000원이 된다.

### 암기 포인트

전부원가는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모두 포함하고, FIFO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원가부터 먼저 흘려보낸다.

NoteBase

**문 31. (주)세무는 보조부문 A, B와 제조부문 P, Q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와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부문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던 중, (주)한국으로부터 보조부문 A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150에, (주)대한으로부터는 보조부문 B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200에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주)세무가 보조부문의 용역을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하는 고정원가를 회피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사용부문 / 제공부문 | 보조부문 | | 제조부문 | | 용역생산량 |
|---|---|---|---|---|---|
| | A | B | P | Q | |
| A | 10% | 40% | 20% | 30% | 1,000단위 |
| B | 20% | 10% | 40% | 30% | 2,000단위 |
| ○ 보조부문 A의 원가: ₩50,000 + ₩70 × 1,000단위 | | | | | |
| ○ 보조부문 B의 원가: ₩30,000 + ₩150 × 2,000단위 | | | | | |

① (주)세무는 보조부문 A와 B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주)세무가 보조부문 A를 폐쇄하고 (주)한국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7,000 증가한다.

③ (주)세무가 보조부문 B를 폐쇄하고 (주)대한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20,000 감소한다.

④ (주)세무가 보조부문 A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단위당 ₩120이다.

⑤ (주)세무가 보조부문 B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단위당 ₩170이다.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보조부문 폐쇄로 절감되는 변동원가와 외부구입원가를 비교하고, 보조부문 간 상호 용역수수량의 감소까지 반영하는 문제이다. 회피할 수 없는 고정원가는 의사결정의 관련원가에서 제외한다.

### 조건 정리

보조부문 A의 변동원가는 단위당 70원, 보조부문 B의 변동원가는 단위당 150원이다. A 폐쇄 시 A가 받던 B 용역 400단위가 없어져 B 생산량은 2,000단위에서 1,600단위로 20% 감소하고, 이에 따라 B가 사용하던 A 용역도 400단위에서 320단위로 감소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구입할 A 용역은 B용 320단위와 P·Q용 500단위를 합한 820단위이다. B 폐쇄 시에는 같은 방식으로 A 생산량이 1,000단위에서 600단위로 40% 감소하고, A가 사용할 B 용역은 400단위에서 240단위로 감소하므로 외부에서 구입할 B 용역은 1,640단위이다.

### 사용할 공식

영업이익 증가액 = 폐쇄로 절감되는 변동원가 - 외부구입원가이다. 고정원가는 폐쇄해도 회피할 수 없으므로 비교에서 제외한다. 외부구입 최대단가는 폐쇄로 절감되는 변동원가를 실제 외부구입량으로 나눈 값이다.

NoteBase

### 계산 과정

A 폐쇄 시 절감되는 변동원가는 A 자체 변동원가 70,000원과 B 생산량 400단위 감소에 따른 변동원가 60,000원을 합한 130,000원이다. 외부구입원가는 820 × 150 = 123,000원이므로 영업이익은 7,000원 증가한다. A 용역의 최대 외부구입단가는 130,000 ÷ 820 ≈ 158.54원이다.
B 폐쇄 시 절감되는 변동원가는 B 자체 변동원가 300,000원과 A 생산량 400단위 감소에 따른 변동원가 28,000원을 합한 328,000원이다. 외부구입원가는 1,640 × 200 = 328,000원이므로 영업이익은 변하지 않는다. B 용역의 최대 외부구입단가는 328,000 ÷ 1,640 = 200원이다.

### 선지 판단

① X — A를 폐쇄하고 외부에서 구입하면 영업이익이 7,000원 증가하므로 A와 B를 모두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표현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A는 폐쇄·외부구입이 유리하고, B는 유지와 외부구입의 손익이 같다.
② O — A 폐쇄 시 절감액 130,000원에서 외부구입원가 123,000원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7,000원 증가한다.
③ X — B 폐쇄 시 절감액과 외부구입원가가 각각 328,000원으로 같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20,000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
④ X — A 용역의 최대 외부구입단가는 단위당 약 158.54원이다. 따라서 단위당 120원이라는 표현은 틀리다.
⑤ X — B 용역의 최대 외부구입단가는 단위당 200원이다. 따라서 단위당 170원이라는 표현은 틀리다.

### 오답 포인트

고정원가를 절감액에 포함하거나, 폐쇄되는 부문이 받던 상대 보조부문의 용역과 그에 따른 상대 부문의 생산량 감소를 누락하기 쉽다. 특히 A의 외부구입량을 기존 총생산량 1,000단위로 잡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감소한 B의 수요를 반영한 820단위로 잡아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폐쇄 부문이 받던 상대 보조부문의 용역을 제거하여 상대 부문의 새 생산량을 구한다. 그 생산량 감소율만큼 폐쇄 부문 용역에 대한 상대 부문의 수요도 줄인 뒤 실제 외부구입량을 계산하고, 회피 가능한 변동원가와 외부구입원가를 비교한다.

### 암기 포인트

외부구입 의사결정에서는 회피 불가능 고정원가를 제외하고, 보조부문 간 상호 용역의 연쇄 감소를 반영한다.

NoteBase

**문 32. (주)세무는 주산품 A, B와 부산품S를 생산한다. 당기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9,500이다.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NRV)를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하며, 당기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산품B의 매출총이익은? (단, 기초 재고자산은 없으며, 부산품S는 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한다.)**

| 제품 |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 생산량 | 판매량 |
|---|---|---|---|---|
| A | ₩2,000 | ₩40 | 200단위 | 180단위 |
| B | 1,000 | 20 | 250 | 200 |
| S | 500 | 15 | 100 | 90 |

① ₩480

② ₩560

③ ₩580

④ ₩750

⑤ ₩81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부산품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결합원가에서 차감한 뒤, 주산품의 분리점 순실현가능가치 비율로 나머지 결합원가를 배부하고 판매량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결합원가 9,500원, A의 추가가공원가 2,000원 · 판매가격 40원 · 생산량 200단위, B의 추가가공원가 1,000원 · 판매가격 20원 · 생산량 250단위 · 판매량 200단위, S의 추가가공원가 500원 · 판매가격 15원 · 생산량 100단위이다.
구해야 할 값: 주산품 B의 매출총이익이다.
주의할 조건: 부산품 S는 생산시점에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하므로 S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결합원가에서 먼저 차감한다. 또한 B는 생산량 250단위 중 200단위만 판매되었으므로 B의 총제품원가 전액이 아니라 판매된 80%만 매출원가가 된다.

NoteBase

### 사용할 공식

NRV=최종 판매가치-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
제품별 배부 결합원가=주산품 배부대상 결합원가×해당 주산품 NRV주산품 전체 NRV
매출원가=총제품원가×판매량생산량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
순실현가능가치 기준은 분리점 이후의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해야 제품별 분리점 가치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

### 계산 과정

1. 부산품 S의 순실현가능가치는 15원 × 100단위 - 500원 = 1,000원이다. 따라서 주산품에 배부할 결합원가는 9,500원 - 1,000원 = 8,500원이다.
2. A의 순실현가능가치는 40원 × 200단위 - 2,000원 = 6,000원이고, B의 순실현가능가치는 20원 × 250단위 - 1,000원 = 4,000원이다. 따라서 A와 B의 배부비율은 6,000:4,000 = 60%:40%이다.
3.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8,500원 × 40% = 3,400원이다. B의 추가가공원가 1,000원을 더하면 B의 총제품원가는 4,400원이다.
4. B의 단위당 원가는 4,400원 ÷ 250단위 = 17.6원이고, 판매된 200단위의 매출원가는 17.6원 × 200단위 = 3,520원이다.
5. B의 매출액은 20원 × 200단위 = 4,000원이므로 매출총이익은 4,000원 - 3,520원 = 480원이다.

### 선지 판단

① O — 계산된 B의 매출총이익이 480원이므로 맞다.
② X — 56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 '₩560'은 '₩480'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58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 '₩580'은 '₩480'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75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 '₩750'은 '₩480'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81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 '₩810'은 '₩480'으로 고쳐야 한다.
계산 결과가 480원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 오답 포인트

부산품 S의 순실현가능가치 1,000원을 주산품 배부대상 결합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거나, B의 추가가공원가를 순실현가능가치 계산과 총제품원가 계산에서 각각 반영하지 않으면 배부액이 달라진다. 또한 생산량 250단위와 판매량 200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총제품원가 4,400원을 모두 매출원가로 처리하면 기말재고 50단위를 누락하게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산품을 생산시점의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하는 결합원가 문제는 '부산품 NRV 차감 → 주산품별 NRV 계산 → 결합원가 배부 → 추가가공원가 합산 → 판매량 비율만큼 매출원가 인식 → 매출총이익 계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부산품 NRV는 결합원가에서 먼저 빼고, 주산품 NRV는 배부비율에 쓰며, 매출원가는 판매된 수량만 반영한다.

NoteBase

**문 33.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x2년도 기초제품 수량은 100단위, 생산량은 2,000단위, 판매량은 1,800단위이다. 20x2년의 제품 판매가격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2년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초변동원가계산(throughput costing)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금액은? (단, 20x1년과 20x2년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항목 | | 금액 |
|---|---|---|
| 제품 단위당 | 판매가격 | ₩250 |
| | 직접재료원가 | 30 |
| | 직접노무원가 | 50 |
| | 변동제조간접원가 | 60 |
| | 변동판매관리비 | 15 |
|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 | ₩50,000 |
| 고정판매관리비(총액) | | 10,000 |

① ₩10,000

② ₩11,000

③ ₩20,000

④ ₩22,000

⑤ ₩33,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에서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제조원가의 차이를 이용하여 영업이익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제품은 100단위이고, 당기 생산량은 2,000단위이며, 당기 판매량은 1,800단위이다. 따라서 기말제품은 300단위이고 재고는 200단위 증가한다.
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 30원, 직접노무원가 50원, 변동제조간접원가 60원을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 30원만 제품원가에 포함하고 직접노무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두 방법의 단위당 재고화 원가 차이는 50원 + 60원 = 110원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두 방법 모두 기간비용이므로 영업이익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영업이익 차이=재고증가량×(직접노무원가+변동제조간접원가)
재고가 증가하면 변동원가계산은 초변동원가계산보다 더 많은 제조원가를 기말재고로 이연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기말제품 수량은 100단위 + 2,000단위 - 1,800단위 = 300단위이다.
2. 재고증가량은 300단위 - 100단위 = 200단위이다.
3. 단위당 재고화 원가 차이는 50원 + 60원 = 110원이다.
4. 영업이익 차이는 200단위 × 110원 = 22,000원이다. 재고가 증가했으므로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초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보다 22,000원 크다.

**선지 판단**

① X — 10,000원은 직접노무원가 50원만 재고화 원가 차이에 반영한 값이다. 변동제조간접원가 60원도 포함해야 하므로 올바른 차이금액은 22,000원이다.
② X — 11,000원은 재고증가량을 100단위로 잘못 계산한 값이다. 실제 재고증가량은 200단위이므로 올바른 차이금액은 22,000원이다.
③ X — 20,000원은 단위당 재고화 원가 차이를 100원으로 잘못 적용한 값이다. 직접노무원가 50원과 변동제조간접원가 60원의 합계는 110원이므로 올바른 차이금액은 22,000원이다.
④ O — 200단위 × 110원 = 22,000원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⑤ X — 33,000원은 기말재고 300단위 전체에 110원을 곱한 값이다. 기초재고의 차이를 함께 반영하려면 기말재고가 아니라 재고증가량 200단위를 사용해야 하므로 올바른 차이금액은 22,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초변동원가계산에서는 직접노무원가까지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과,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 전체가 아니라 기초재고에서 기말재고로 변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말재고와 재고증가량을 구하고, 두 원가계산에서 재고화 여부가 달라지는 단위당 원가를 찾은 뒤, 재고증가량과 단위당 원가 차이를 곱한다. 재고가 증가하면 더 많은 원가를 재고로 이연하는 방법의 영업이익이 더 커진다.

**암기 포인트**

변동원가계산은 모든 변동제조원가를 재고화하지만, 초변동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만 재고화한다.

NoteBase

**문 34. (주)세무는 직접재료를 투입하여 두 개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1공정에서는 직접재료 1톤을 투입하여 제품A 400kg과 중간제품M 600kg을 생산하며, 제2공정에서는 중간제품M을 가공하여 제품B 600kg을 생산한다. 직접재료는 제1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모든 공정에서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공정에서는 변동전환원가가 ₩200/톤, 고정원가는 ₩70,000이 발생하였으며, 제2공정에서는 변동전환원가가 ₩1,200/톤, 고정원가는 ₩58,000이 발생하였다. 직접재료 구입원가는 ₩2,000/톤이며, 제품 A와 B의 판매가격은 각각 ₩3,000/톤, ₩5,000/톤이다. 생산된 모든 제품이 전량 판매된다고 가정할 경우, 각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① 제품A: 40톤 / 제품B: 60톤

② 제품A: 48톤 / 제품B: 72톤

③ 제품A: 50톤 / 제품B: 75톤

④ 제품A: 60톤 / 제품B: 90톤

⑤ 제품A: 80톤 / 제품B: 120톤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결합생산에서 고정된 판매배합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묶음당 공헌이익으로 총고정원가를 회수하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직접재료 1ton을 투입할 때 제품 A 0.4ton, 제품 B 0.6ton이 생산되므로 판매배합은 A:B=2:3이다.
묶음당 매출액은 제품 A 1,200원과 제품 B 3,000원을 합한 4,200원이다.
묶음당 변동원가는 직접재료비 2,000원, 제1공정 변동전환원가 200원, 제2공정 변동전환원가 1,200원/ton×0.6 ton=720원을 합한 2,920원이다.
총고정원가는 70,000원+58,000원=128,000원이다.

### 사용할 공식

묶음당 공헌이익=묶음당 매출액-묶음당 변동원가
손익분기점 묶음 수=총고정원가묶음당 공헌이익
두 제품은 항상 A:B=2:3으로 함께 생산·판매되므로 개별 제품별로 따로 손익분기점을 구하지 않고 결합된 한 묶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묶음당 공헌이익은 4,200원-2,920원=1,280원이다.
2. 손익분기점 묶음 수는 128,000 ÷ 1,280 = 100이다.
3. 묶음 100개에서 제품 A 판매량은 0.4ton × 100 = 40ton, 제품 B 판매량은 0.6ton × 100 = 60ton이다.

**선지 판단**

① O — A 40ton, B 60ton은 손익분기점 묶음 100개의 판매량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X — A 48ton, B 72ton은 묶음 120개에 해당하며 공헌이익이 153,600원으로 총고정원가 128,000원을 초과한다. 올바르게는 A 40ton, B 60ton이다.
③ X — A 50ton, B 75ton은 묶음 125개에 해당하며 공헌이익이 160,000원으로 총고정원가를 초과한다. 올바르게는 A 40ton, B 60ton이다.
④ X — A 60ton, B 90ton은 묶음 150개에 해당하며 공헌이익이 192,000원으로 총고정원가를 초과한다. 올바르게는 A 40ton, B 60ton이다.
⑤ X — A 80ton, B 120ton은 묶음 200개에 해당하며 공헌이익이 256,000원으로 총고정원가의 두 배이다. 올바르게는 A 40ton, B 60ton이다.

**오답 포인트**

제2공정 변동전환원가 1,200원/톤을 투입량 1ton 전체에 적용하면 안 된다. 제2공정에는 중간제품 M 0.6ton만 투입되므로 720원만 반영한다. 또한 두 제품의 판매배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총고정원가를 제품별로 임의 배분하지 않고 묶음당 공헌이익으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결합제품 손익분기점 문제는 기준 투입량 하나에서 각 제품의 산출량을 정하고, 묶음당 매출액과 모든 변동원가를 계산한 뒤, 총고정원가를 묶음당 공헌이익으로 나눈다. 마지막에 손익분기점 묶음 수에 각 제품의 산출량을 곱한다.

**암기 포인트**

결합제품 손익분기점은 '고정 판매배합 한 묶음의 공헌이익'으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35. (주)세무는 두 종류의 제품 A와 B를 생산 · 판매한다. 두 제품의 월간 예상 판매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월간 최대 사용가능한 기계시간은 50시간이다. (주)세무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월 최적 제품배합은? (단, 월간 고정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 항목 | | 제품A | 제품B |
|---|---|---|---|
| 제품 단위당 | 판매가격 | ₩50 | ₩45 |
| | 변동제조원가 | 32 | 25 |
| | 고정제조간접원가 | 5 | 7 |
| | 변동판매관리비 | 8 | 5 |
| | 고정판매관리비 | 2 | 2 |
| 기계시간당 생산량 | | 4단위 | 2단위 |
| 월간 예상수요량 | | 120단위 | 80단위 |

① 제품A: 40단위 / 제품B: 80단위

② 제품A: 60단위 / 제품B: 70단위

③ 제품A: 80단위 / 제품B: 60단위

④ 제품A: 100단위 / 제품B: 50단위

⑤ 제품A: 120단위 / 제품B: 40단위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제약자원인 기계시간 1시간당 공헌이익을 비교하여 우선 생산할 제품을 정하고, 수요 한도와 남은 기계시간을 반영해 최적 제품배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 A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50원 - 32원 - 8원 = 10원이고, 제품 B는 45원 - 25원 - 5원 = 15원이다.
기계시간 1시간당 생산량은 A 4단위, B 2단위이며, 월간 기계시간은 50시간이다. 월간 예상수요는 A 120단위, B 80단위이다.
월간 고정원가 총액은 제품배합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최적 배합의 비교에서는 제외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격-단위당 변동원가이다.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은 단위당 공헌이익× 제약자원 1시간당 생산량이다.
기계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위당 공헌이익 자체가 아니라 기계시간 1시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한다.

**계산 과정**

1. A의 기계시간 1시간당 공헌이익은 10원 × 4단위 = 40원이다.
2. B의 기계시간 1시간당 공헌이익은 15원 × 2단위 = 30원이다. 따라서 A를 먼저 수요 한도까지 생산한다.
3. A 120단위 생산에는 120 ÷ 4 = 30시간이 필요하다. 남은 시간은 50 - 30 = 20시간이다.
4. 남은 20시간으로 B를 20 × 2 = 40단위 생산한다. 따라서 최적 제품배합은 A 120단위, B 40단위이고 총공헌이익은 120 × 10원 + 40 × 15원 = 1,8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A 40단위와 B 80단위는 50시간을 사용하지만 총공헌이익이 1,600원에 그친다. 틀린 배합 'A 40단위, B 80단위'는 'A 120단위, B 4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② X — A 60단위와 B 70단위는 50시간을 사용하지만 총공헌이익은 1,650원이다. 틀린 배합 'A 60단위, B 70단위'는 'A 120단위, B 4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③ X — A 80단위와 B 60단위는 50시간을 사용하지만 총공헌이익은 1,700원이다. 틀린 배합 'A 80단위, B 60단위'는 'A 120단위, B 4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④ X — A 100단위와 B 50단위는 50시간을 사용하지만 총공헌이익은 1,750원이다. 틀린 배합 'A 100단위, B 50단위'는 'A 120단위, B 4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⑤ O — A 120단위와 B 40단위는 50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총공헌이익이 1,800원으로 가장 크다.

**오답 포인트**

B는 단위당 공헌이익이 15원으로 A의 10원보다 크지만, 기계시간 1시간당 공헌이익은 A 40원, B 30원이다. 단위당 공헌이익만 비교하여 B를 우선 생산하면 ①과 같은 배합을 고르게 된다.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는 총액이 일정하므로 제품별 공헌이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약자원이 있는 제품배합 문제에서는 각 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한 뒤 제약자원 1단위당 공헌이익으로 환산한다. 그 값이 큰 제품부터 수요 한도까지 배정하고, 남은 제약자원을 다음 제품에 배정한다.

**암기 포인트**

제약자원이 하나이면 '제약자원 1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수요 한도까지'가 최적 배합의 기준이다.

NoteBase

**문 36. (주)세무는 20x1년에 제품A를 5,000단위 생산하여 전량 국내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제품A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7,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1,000이다. (주)세무는 20x1년 초에 해외 거래처로부터 제품A 3,000단위를 단위당 ₩8,0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해외 거래처의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제품A 1단위당 부품 B(단위당 외부구입가격: ₩500) 1단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20x1년도 국내시장 판매량을 350단위 감소시켜야 한다. 특별주문과 관련된 판매관리비는 주문수량에 관계없이 ₩300,000 발생한다. (주)세무가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20x1년도 예산이익의 증가(또는 감소) 금액은? (단,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① ₩300,000 증가

② ₩420,000 증가

③ ₩500,000 증가

④ ₩550,000 감소

⑤ ₩800,000 감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특별주문의 증분수익에서 증분원가와 국내판매 감소로 잃는 공헌이익을 차감하여 예산이익의 변동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특별주문 수량은 3,000단위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8,000원이다. 특별주문 1단위당 변동제조원가 7,000원과 부품 B 원가 500원이 추가된다. 특별주문 관련 판매관리비 300,000원은 주문수량과 무관하지만 주문을 수락할 때 새로 발생하므로 증분원가이다. 또한 국내판매 350단위가 감소하므로 해당 국내판매의 공헌이익을 기회원가로 반영한다.

**사용할 공식**

예산이익 증가액=특별주문 공헌이익-특별주문 관련 고정 판매관리비-상실한 국내판매 공헌이익
특별주문 수락 여부는 수락으로 인해 달라지는 수익과 원가만 비교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 계산 과정

1. 특별주문 자체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8,000원 - 7,000원 - 500원 = 500원이다.
2. 특별주문 3,000단위의 공헌이익은 500원 × 3,000단위 = 1,500,000원이다.
3. 특별주문 관련 판매관리비를 차감하면 1,500,000원 - 300,000원 = 1,200,000원이다.
4. 국내판매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00원 - 7,000원 - 1,000원 = 2,000원이다.
5. 국내판매 350단위 감소에 따른 상실 공헌이익은 2,000원 × 350단위 = 700,000원이다.
6. 따라서 예산이익 증가액은 1,200,000원 - 700,000원 = 500,000원이다.

### 선지 판단

① X — 300,000원 증가는 틀린 금액이다. 특별주문 순증분이익 1,200,000원에서 상실한 국내판매 공헌이익 700,000원을 차감하면 올바르게는 500,000원 증가이다.
② X — 420,000원 증가는 틀린 금액이다. 주문수량과 무관한 판매관리비도 주문 수락 시 새로 발생하는 300,000원 전액을 반영해야 하며, 계산 결과는 올바르게는 500,000원 증가이다.
③ O — 특별주문 공헌이익 1,500,000원에서 관련 판매관리비 300,000원과 상실한 국내판매 공헌이익 700,000원을 차감하면 500,000원 증가한다.
④ X — 550,000원 감소는 증감 방향과 금액이 모두 틀리다. 관련 수익과 원가를 모두 반영한 결과는 올바르게는 500,000원 증가이다.
⑤ X — 800,000원 감소는 증감 방향과 금액이 모두 틀리다. 특별주문의 순증분이익이 국내판매 감소의 기회원가보다 500,000원 크므로 올바르게는 500,000원 증가이다.

### 오답 포인트

특별주문 가격 8,000원과 변동제조원가 7,000원만 비교하면 안 된다. 부품 B 원가와 주문 수락으로 새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를 포함하고, 국내판매 감소분은 매출액이 아니라 단위당 공헌이익 2,000원을 잃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별주문 문제는 특별주문 증분수익에서 증분변동원가와 수락 시 발생하는 추가 고정원가를 차감한 뒤, 기존 판매를 포기해야 한다면 상실 공헌이익을 기회원가로 한 번 더 차감한다.

### 암기 포인트

특별주문 의사결정의 핵심은 증분이익 - 기회원가이다. 기존 매출 감소의 기회원가는 상실한 매출액이 아니라 상실한 공헌이익이다.

NoteBase

**문 37.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설립되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피커를 생산하고 있다. 스피커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0이며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1,500,000이다. (주)세무는 당기에 국내시장에서 스피커 300단위를 판매하고,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고 남는 스피커는 해외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스피커의 국내 판매가격은 단위당 ₩10,000이며, 해외 판매가격은 단위당 ₩9,000이다. 해외시장에 판매하더라도 원가구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법인세율이 20%일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① 350단위

② 375단위

③ 400단위

④ 450단위

⑤ 500단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내시장 판매량이 먼저 확정된 상황에서 국내 판매의 공헌이익을 고정원가에서 차감하고, 남은 고정원가를 해외 판매의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회수하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국내 판매량: 300단위
국내 단위당 판매가격: 10,000원
해외 단위당 판매가격: 9,000원
단위당 변동원가: 6,000원
연간 고정원가: 1,500,000원
주의할 조건: 국내에서 300단위를 먼저 판매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만 해외에 판매한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세전이익과 법인세가 모두 0이므로 법인세율 20%는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단위당 공헌이익은 $CM = P - V$이다.

국내 판매 후 남은 고정원가는
$F - (P_d - V)Q_d$
이고, 필요한 해외 판매량은
$Q_f = \frac{F - (P_d - V)Q_d}{P_f - V}$
이다.

국내 300단위의 공헌이익으로 고정원가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므로, 남은 고정원가를 해외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어 추가 판매량을 구한다.

**계산 과정**

1. 국내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00원-6,000원=4,000원이다.
2. 국내 300단위의 총공헌이익은 4,000원×300단위=1,200,000원이다.
3. 국내 판매 후 남은 고정원가는 1,500,000원-1,200,000원=300,000원이다.
4. 해외 단위당 공헌이익은 9,000원-6,000원=3,000원이다.
5. 필요한 해외 판매량은 $300{,}000 \div 3{,}000 = 100$단위이다.
6. 손익분기점 총판매량은 국내 300단위+해외 100단위=400단위이다.

**선지 판단**

① X — 350단위의 총공헌이익은 국내분 1,200,000원과 해외 50단위분 150,000원의 합계인 1,350,000원으로, 고정원가보다 150,000원 부족하다. '350단위'는 '4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② X — 375단위의 총공헌이익은 국내분 1,200,000원과 해외 75단위분 225,000원의 합계인 1,425,000원으로, 고정원가보다 75,000원 부족하다. '375단위'는 '4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③ O — 400단위를 판매하면 국내 300단위와 해외 100단위의 총공헌이익이 1,200,000원+300,000원=1,500,000원이 되어 고정원가와 일치한다.
④ X — 450단위에서는 해외 판매가 150단위이므로 총공헌이익이 1,650,000원이 되어 150,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며, '450단위'는 '400단위'로 고쳐야 한다.
⑤ X — 500단위에서는 해외 판매가 200단위이므로 총공헌이익이 1,800,000원이 되어 300,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며, '500단위'는 '400단위'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국내와 해외의 판매가격이 다르므로 전체 판매량에 하나의 공헌이익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된다. 국내 300단위의 공헌이익을 먼저 계산한 뒤 남은 고정원가에 해외 공헌이익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손익분기점의 이익은 0이므로 법인세율 20%를 고정원가나 공헌이익에 곱하는 것은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장별 판매가격이 다르면 판매 순서에 따라 각 시장의 단위당 공헌이익을 따로 계산한다. 먼저 확정 판매량의 총공헌이익을 고정원가에서 차감하고, 잔여 고정원가를 다음 시장의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 뒤 기존 판매량에 더한다.

**암기 포인트**

단계별 판매가격 문제의 손익분기점은 '먼저 판 물량의 공헌이익 차감 → 남은 고정원가를 다음 공헌이익으로 나눔'이다. 손익분기점에서는 법인세가 0이다.

NoteBase

**문 38. (주)세무는 세 개의 제조부문(P1, *P*2, *P*3)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150,000, ₩120,000, ₩12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각 보조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는?**

| 사용부문 / 제공부문 | 제조부문 | | | 보조부문 | |
|---|---|---|---|---|---|
| | P1 | P2 | P3 | S1 | S2 |
| S1 | 40% | 20% | 20% | – | 20% |
| S2 | 30% | 30% | 30% | 10% | – |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 P3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① S1: ₩100,000 / S2: ₩290,000

② S1: ₩120,000 / S2: ₩270,000

③ S1: ₩150,000 / S2: ₩300,000

④ S1: ₩270,000 / S2: ₩120,000

⑤ S1: ₩300,000 / S2: ₩15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상호배분법에서 각 보조부문의 상호배부 후 총원가를 먼저 구한 뒤, 다른 보조부문에서 배부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배부 전 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S1의 제조부문 배부율은 P1 40%, P2 20%, P3 20%이고, S2에 20%를 제공한다.
S2의 제조부문 배부율은 P1·P2·P3에 각각 30%이고, S1에 10%를 제공한다.
제조부문 P1·P2·P3에 배부된 금액은 각각 150,000원, 120,000원, 120,000원이다.
구해야 하는 값은 상호 용역을 배부받기 전 S1과 S2에 집계된 원가이다.

**사용할 공식**

상호배부 후 S1·S2의 총원가를 각각 $T_1$, $T_2$라 하면 제조부문별 배부액은 다음과 같다.
$0.4T_1 + 0.3T_2 = 150{,}000$
$0.2T_1 + 0.3T_2 = 120{,}000$
두 보조부문이 각 제조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비율만큼 총원가가 함께 배부되므로 이 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두 식을 빼면 $0.2T_1 = 30{,}000$이므로 $T_1 = 150{,}000$이다.
이를 둘째 식에 대입하면 $0.2 \times 150{,}000 + 0.3T_2 = 120{,}000$이므로 $T_2 = 300{,}000$이다.
S1은 S2 총원가의 10%인 30,000원을 배부받았으므로 배부 전 S1 원가는 $150{,}000 - 30{,}000 = 120{,}000$원이다.
S2는 S1 총원가의 20%인 30,000원을 배부받았으므로 배부 전 S2 원가는 $300{,}000 - 30{,}000 = 27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S1 100,000원, S2 290,0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S1 120,000원, S2 270,000원이다.
② O — 배부 전 원가는 S1 120,000원, S2 270,000원이다.
③ X — S1 150,000원, S2 300,000원은 상호 용역을 반영한 배부 후 총원가이다. 올바르게는 다른 보조부문에서 배부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S1 120,000원, S2 270,000원으로 고친다.
④ X — S1과 S2의 배부 전 원가를 서로 뒤바꾼 값이다. 올바르게는 S1 120,000원, S2 270,000원이다.
⑤ X — S1 300,000원, S2 150,000원은 상호배부 후 총원가를 서로 뒤바꾼 값이며 배부 전 원가도 아니다. 올바르게는 S1 120,000원, S2 27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③처럼 연립방정식으로 구한 S1 150,000원과 S2 300,000원을 곧바로 배부 전 원가로 판단하기 쉽다. 이 값은 다른 보조부문에서 받은 용역까지 포함한 총원가이므로, 각각 배부받은 30,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조부문에 실제 배부된 금액으로 상호배부 후 보조부문 총원가의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그다음 문제에서 배부 전 원가를 물으면 다른 보조부문에서 배부받은 금액을 총원가에서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상호배부 후 총원가 = 배부 전 원가 + 다른 보조부문에서 받은 원가이다. 따라서 배부 전 원가는 총원가에서 받은 원가를 뺀 값이다.

NoteBase

**문 39.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x1년의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은 ₩300,000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800,000이다.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으로 직접노무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기준조업도는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이고, 20x1년에 실제로 투입된 직접노무시간은 850시간이다. 20x1년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가 ₩80,000(불리)할 경우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① ₩15,000 유리

② ₩45,000 유리

③ ₩10,000 불리

④ ₩15,000 불리

⑤ ₩45,000 불리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을 역산한 뒤,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 300,000원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800,000원
기준조업도: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
실제 직접노무시간: 850시간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80,000원 불리
구해야 할 값: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NoteBase

**사용할 공식**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800,000원 ÷ 1,000시간 = 800원/시간이다.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300,000원 ÷ 1,000시간 = 300원/시간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800원/시간 × (기준조업도-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 (실제시간-표준시간)

조업도차이는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능률차이는 실제시간과 그 표준시간의 차이에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가 80,000원 불리이므로 다음과 같다.
80,000원=800원/시간×(1,000시간-SH)
따라서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SH*는 900시간이다.

2.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다음과 같다.
300원/시간×(850시간-900시간)=-15,000원

3. 실제시간이 표준시간보다 50시간 적으므로 15,000원 유리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 결과가 15,000원 유리이므로 옳다.
② X — 계산 결과는 45,000원 유리가 아니라 15,000원 유리이다. 틀린 표현 '45,000원 유리'는 '15,000원 유리'로 고쳐야 한다.
③ X — 계산 결과는 10,000원 불리가 아니라 15,000원 유리이다. 틀린 표현 '10,000원 불리'는 '15,000원 유리'로 고쳐야 한다.
④ X — 차이의 크기 15,000원은 맞지만 실제시간 850시간이 표준시간 900시간보다 적으므로 불리가 아니라 유리이다. 틀린 표현 '15,000원 불리'는 '15,000원 유리'로 고쳐야 한다.
⑤ X — 계산 결과는 45,000원 불리가 아니라 15,000원 유리이다. 틀린 표현 '45,000원 불리'는 '15,000원 유리'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계산에 실제 투입시간 850시간을 바로 넣으면 안 된다. 조업도차이는 기준조업도와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을 비교한다. 또한 능률차이에서 실제시간이 표준시간보다 적으면 원가를 절약한 것이므로 유리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로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을 구한다. 그다음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에 실제시간-표준시간을 곱하고, 실제시간이 더 적으면 유리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조업도차이는 기준조업도와 표준시간의 차이이고,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실제시간과 표준시간의 차이이다. 실제시간이 표준시간보다 적으면 유리이다.

NoteBase

**문 40. (주)세무는 직접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직접재료의 20%가 제조과정에서 증발되는데, 이러한 증발은 정상적이며 제조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완성품 1단위에는 직접재료 0.1kg이 포함되어 있고, 당기에 2,000단위가 완성되었다. 당기에 투입된 직접재료는 $190kg$, 기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25%)은 $38kg$, 기초재공품은 $90kg$이었다.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단, 공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25%

② 30%

③ 40%

④ 50%

⑤ 6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공정 전반에 걸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증발을 전환원가 완성도에 비례해 반영하고, 물량 흐름을 이용하여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완성품에 포함된 직접재료는 $2{,}000 \times 0.1 = 200kg$이다. 완성품은 제조과정을 모두 거쳤으므로 최초 투입량의 20%가 증발하고 80%가 남는다.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25%이므로 최초 투입량의 $20\% \times 25\% = 5\%$가 증발하고 95%가 남는다.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를 $x$라고 하면 기초재공품에는 최초 투입량의 $1 - 0.2x$가 남아 있다.

**사용할 공식**

공정 중 현재 물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현재 물량=최초 투입량×(1-최종 증발률×전환원가 완성도)
증발이 공정 전반에 걸쳐 평균적으로 발생하므로, 각 재공품이 지금까지 겪은 증발률을 전환원가 완성도에 비례시켜야 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완성품 200$kg$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최초 직접재료는 $200 \div 0.8 = 250kg$이다.
2. 기말재공품 38$kg$은 최초 투입량의 95%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최초 직접재료는 $38 \div 0.95 = 40kg$이다.
3.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대응하는 최초 직접재료는 합계 $250 + 40 = 290kg$이다.
4. 당기 투입량이 190$kg$이므로 기초재공품에 대응하는 최초 직접재료는 $290 - 190 = 100kg$이다.
5. 기초재공품은 최초 100$kg$ 중 현재 90$kg$이 남았으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90 = 100(1 - 0.2x)$

$0.9 = 1 - 0.2x, \quad x = 0.5 = 50\%$

따라서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50%이다.

**선지 판단**

① X — 25%라면 기초재공품의 최초 투입량은 $90 \div 0.95 \approx 94.74kg$이 되어 필요한 100$kg$과 일치하지 않는다. 25%가 아니라 50%이다.

② X — 30%라면 기초재공품의 최초 투입량은 $90 \div 0.94 \approx 95.74kg$이 되어 물량 흐름이 맞지 않는다. 30%가 아니라 50%이다.

③ X — 40%라면 기초재공품의 최초 투입량은 $90 \div 0.92 \approx 97.83kg$이 되어 필요한 100$kg$보다 작다. 40%가 아니라 50%이다.

④ O — 50%라면 누적 증발률은 $20\% \times 50\% = 10\%$이고, 최초 100$kg$의 90%인 90$kg$이 남으므로 모든 물량 조건과 일치한다.

⑤ X — 60%라면 기초재공품의 최초 투입량은 $90 \div 0.88 \approx 102.27kg$이 되어 필요한 100$kg$보다 크다. 60%가 아니라 50%이다.

**오답 포인트**

기말재공품 38$kg$과 기초재공품 90$kg$은 증발이 일부 진행된 현재 물량이다. 이를 최초 투입량처럼 그대로 더하거나, 기말재공품에 최종 증발률 20%를 전부 적용하면 틀린다. 각 재공품에는 전환원가 완성도만큼 진행된 증발률만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증발률과 공정 완성도가 함께 주어지면 먼저 각 단계의 누적 증발률을 '최종 증발률 × 전환원가 완성도'로 계산한다. 현재 물량을 잔존율로 나누어 최초 투입량으로 환산한 뒤 전체 물량 흐름을 맞춘다.

**암기 포인트**

공정 전반의 균등 증발에서는 누적 증발률이 전환원가 완성도에 비례하며, 현재 물량을 잔존율로 나누면 최초 투입량이 된다.

NoteBase